



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CONTENTS

PART 01	녹색제품 구매지침 개요	5
	1. 목적 및 근거	6
	2. 기본방향	6
PART 02	녹색제품 의무구매	7
	1. 녹색제품 개요	8
	2. 녹색제품 의무구매 개요	9
	3. 녹색제품 구매절차	12
	4.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16
	5.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구매실적 제출 및 공표	18
	6. 그 밖의 사항	20
PART 03	참고사항	23
	[참고사항 1]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 법령 및 정책	27
	[참고사항 2]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현황	50
	[참고사항 3] 녹색제품 검색방법	56
	[참고사항 4]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녹색제품 구매하기	58
	[참고사항 5] '녹색장터'를 통한 녹색제품 구매하기	60
	[참고사항 6] 에코스퀘어(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시스템) 사용방법	61
	[참고사항 7] 녹색제품 의무구매 수범사례	91
	[참고사항 8] 녹색제품 경영평가 지표	98
PART 04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FAQ	107

최근 주요 변경내용

■ 5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26년부터 '5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2026년~2030년)' 수립·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에서 확인('26년 3월 이후)

■ 녹색제품 공공조달 경쟁력 제고

-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조달청 업무협약('25.5.) 이행의 일환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 내 환경표지 및 저탄소 신인도 1.25점 신설 및 우수재활용제품 신인도 0.5점 확대('25.9.1.)

기존			현행('25.9.1.~)		
환경표지	저탄소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저탄소	우수재활용
0	0	0.75	1.25	1.25	1.25

■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미제출기관 조치

- 구매이행계획(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및 구매실적(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법정 제출기한 미준수 시 자동 수립·확정

기존	현행('26년 2월~)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미제출 시 미제출 기관으로 대국민 공표	구매이행계획 미제출 시 직전년도 실적으로 구매이행계획 자동 수립, 구매실적 미제출 시 에코스퀘어에 집계된 실적으로 자동 확정

■ '녹색제품 구매 명세서' 서비스 도입

- 녹색제품 구매실적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에코스퀘어에 개인정보를 등록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녹색제품 구매 명세서' 서비스 본격 도입('26년 6월~)

1) 기관 총괄구매실적(2025년)

기관명	총구매금액(원)	녹색구매금액(원)	구매율(%)
	408,646,400	391,222,500	95.7

2) 전년도 구매실적 및 계획대비 구매실적

구분	전년도 녹색구매금액(A)(원)	현재 녹색구매금액(B)(원)	증감 금액(B-A)(원)
전년도 구매실적 (2024년)	518,394,041	391,222,500	-127,171,541
구분	당해연도 구매이행계획(A)(원)	현재 녹색구매금액(B)(원)	부족 금액(A-B)(원)
구매이행계획 (2025년)	554,000,000	391,222,500	162,777,500

PART 01

녹색제품 구매지침 개요



PART 01 녹색제품 구매지침 개요

1 목적 및 근거

■ 목적

-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구매법’)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이행 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
- 또한, 녹색제품 의무구매 개요·대상, 녹색제품 정보, 구매방법,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공표 등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에서 제도이행 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지침 수립

■ 관련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제6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제7조)
-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년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공표해야하고,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공공기관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0조)

2 기본방향

-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구매절차,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집계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원
-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이행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고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수범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녹색제품 구매 시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제작

PART 02

녹색제품 의무구매



PART 02 녹색제품 의무구매

1 녹색제품 개요

■ 녹색제품의 정의 및 범위


-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이며,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 저탄소 및 우수재활용 제품임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 인증 받은 제품 또는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저탄소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인증별 녹색제품 현황]

구분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
표시			
운영목적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KS 품질 이상 만족)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
대상품목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162개 제품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제외한 모든 제품	폐지,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13개 분야
인증제품수	4,881개 업체 18,659개 제품 ('25.10월말 기준)	349개 업체 1,371개 제품 ('25.10월말 기준)	359개 업체 413개 품목 ('25.10월말 기준)
인증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원순환산업인증원
홈페이지	ecosq.or.kr	ecosq.or.kr	buygr.or.kr

■ 녹색제품의 기준

• 환경표지제품 인증기준

- 환경기준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과정에서 환경성(유해물질 저감, 인체 안전, 절전, 절수, 재활용, 저소음 등) 고려
- 품질기준은 해당 제품별 한국산업규격(KS) 등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탄소제품 인증기준

- 제품의 전과정(원료 채취, 수송, 제조, 사용, 폐기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고려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탄소발자국 값이「저탄소제품 기준」고시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소탄소감축률'을 적용한 제품
 - ※ 최대허용탄소배출량 :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량의 최댓값
 - ※ 최소탄소감축률 :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준

- 현장심사기준은 제품 전과정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내 폐자원 재활용률 및 재활용 기술 등 제품의 우수성 검토
- 제품표준은 재활용 원료별·제품별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 등을 검토

■ 녹색제품의 필요성

- 녹색제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소비자 입장에서도 녹색제품 구매는 사회적 환경적 편익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
- 구매단계에서 일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사용단계에서 전기료·물 사용량·폐기물 발생량 절감 등을 통해 비용 회수 가능
-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
- 제품 안전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기여

2 녹색제품 의무구매 개요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구매 하여야 함
- 구매하려는 세부품목을 결정한 후 세부품목에 녹색제품이 있거나, 대체 가능한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구매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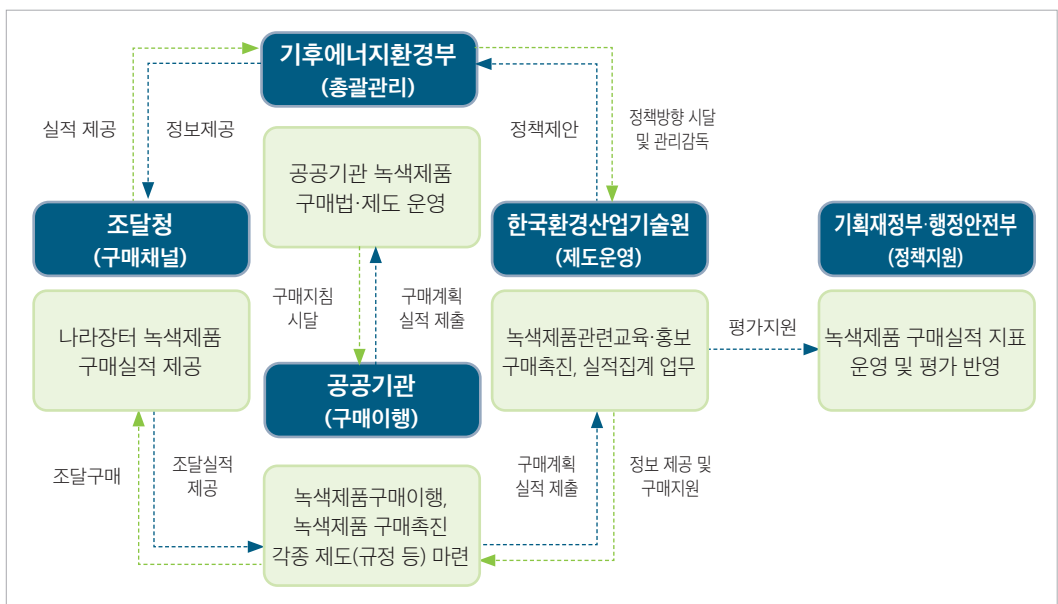
■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최상위기관 현황은 [붙임 2] 참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제도 추진체계

- 기후에너지환경부(총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제도 운영), 조달청(제도 이행), 기획재정부 및 행안부(결과평가) 등 주체별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책 추진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관련 법·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구매지침 마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 구매 계획·실적 집계·관리, 제도 관련 교육·홍보, 컨설팅 등
- (조달청) 녹색제품 정보제공, 나라장터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공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이행, 구매 촉진을 위한 내부 제도 마련 등
- (기재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기관평가에 녹색구매 실적 지표 운영



■ 의무구매 범위

- 공공기관에서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3) 건설 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 지침에 의한 구매절차에 따라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 특히, 다음의 경우에도 녹색제품 구매 및 실적집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인쇄: 인쇄업체에서 구매하는 인쇄용지
 - 청소 및 건물 유지보수: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세제, 비누, 형광등, 수도꼭지, 양변기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토너 카트리지, 프린터 등
 - 사무기기 렌탈·리스: 복합기, 컴퓨터 등을 렌탈·리스 하는 경우
 -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시공회사가 직접 구입하는 아스콘, 창호 등 건설자재
 - 그 밖의 물품 구매가 포함된 모든 용역

■ 의무구매 예외사항

•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예) 건축물 및 구조물의 특성상 동일 공종에 다수 규격의 제품이 필요하나, 인증품목 중 필요한 규격의 일부만 녹색제품이 있어 시공, 품질관리상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공사감독, 책임감리)되는 경우 또는 필수적인 성능, 품질이 요구되어 설계도상에 특정 자재의 성능기준 등 세부규격을 명시한 경우
 예) 지역별 환경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하수처리를 위해 특수 성분 및 성능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나 동일한 규격의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종량제봉투는 지자체 관내 기업 구매를 이유로 예외 요구 시 인정 불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2.1.10. 개정) 녹색제품 우선사용 명시). 또한, 「폐기물관리법」제14조7항에 따라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를 조례로 정하여 제작·유통·판매 대행할 수 있음(녹색제품으로 유도)

※ 발주처의 일반제품 시공요구 시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한 경우, 업무협의를 통해 녹색제품으로 대체 구매해야 함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 산간·도서 등 지리적 여건으로 녹색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예)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구매 예외 증빙자료 필요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예) 녹색제품은 대부분 KS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나,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KS 규격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예) 물품구매 당시 다른 우선구매의 최소 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시 말해 다른 우선 구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

※ 구매하려는 제품과 동일한 규격의 타 우선구매 인증보유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되지 않음

•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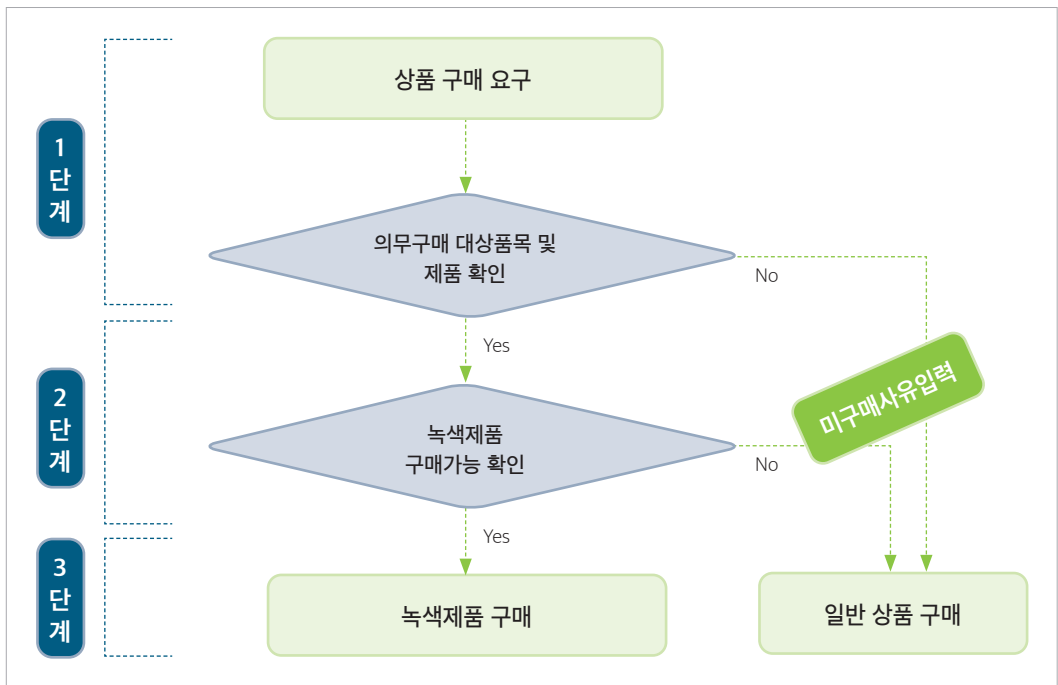
예)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의 발생으로 녹색제품을 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이 경우에도 녹색제품을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녹색제품과 일반제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구매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에 최대한 노력

예) 수해복구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등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 특정사유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녹색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3 녹색제품 구매절차

■ 직접적인 물품 구매의 경우



• 1단계: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 구매 요구가 있을 시에는 구매하려는 물품 품목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인지 여부 확인
- 녹색제품 대상품목이라면 실제 인증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 에코스퀘어(ecosq.or.kr) →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제품 정보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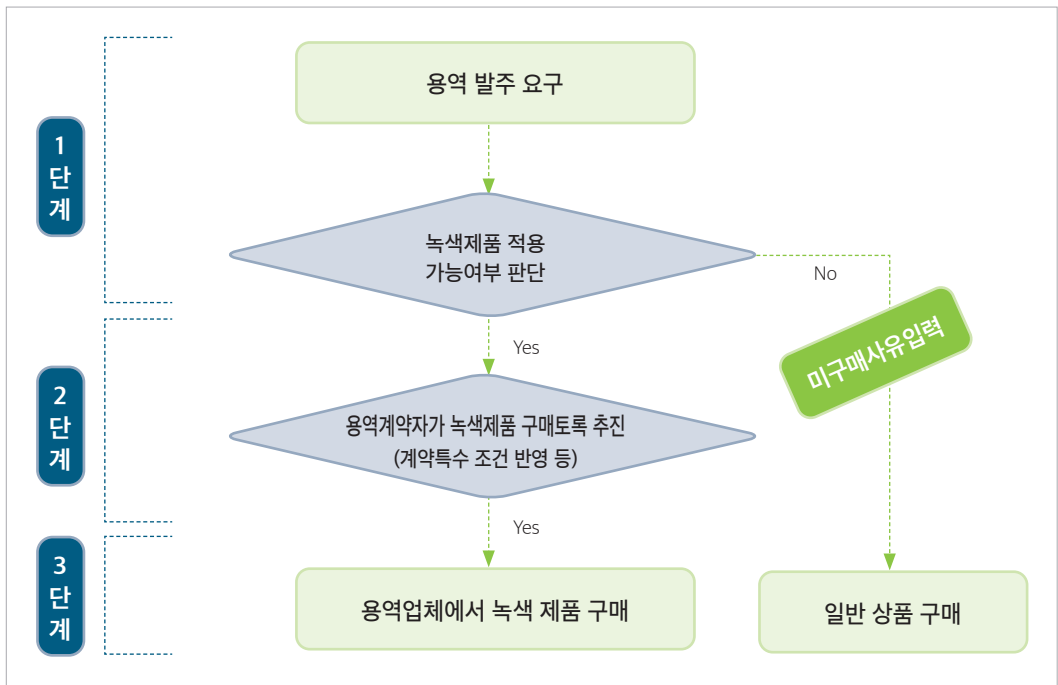
• 2단계: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최종 확인

• 3단계: 녹색제품 구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녹색장터+(greenproduct.co.kr), 녹색장터(greenproduct.kr), 목록정보시스템(goods.g2b.go.kr)에 등재되어 있는 판매처 등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 용역계약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 1단계: 녹색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인증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발주하려는 용역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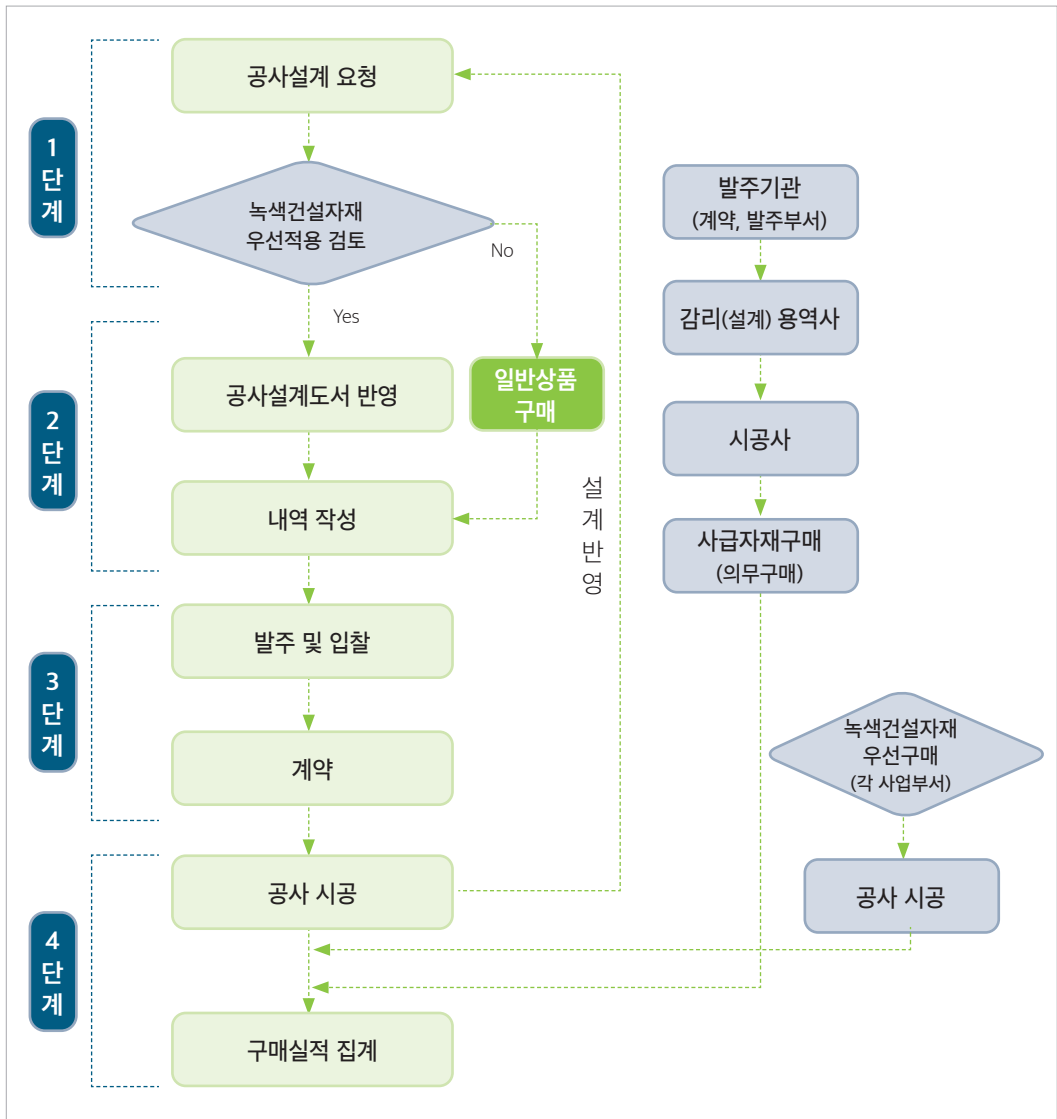
• 2단계: 계약담당자가 녹색제품 구매토록 추진

-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계약담당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치→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녹색제품 사용 및 정산 보고 명시

• 3단계: 용역수행자가 녹색제품 구매

- 용역수행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후,
- 각종 녹색제품(판매처 정보 등) 정보를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 ※ 공공기관(발주처)은 용역수행자에게 계약 수행완료 후 정산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목록 및 증빙서류)을 작성하여 제출 요구
 - ※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 활용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 용역계약 시 녹색제품 구매를 기준으로 원가 산정하여 진행

■ 공사에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는 경우



• 1단계: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적용 검토

- 공사의 성격, 시공성, 안정성과 녹색제품 건설자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설계용역 요청단계에서 과업 지시서 등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적용 명시
- 녹색제품 건설자재는 에코스퀘어>친환경녹색진흥>친환경건설자재를 참고하여 공사 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 적용
 - ※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 이외 인증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실적 인정 불가

• 2단계: 공사 설계도서 반영

- 공공기관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반영 여부 확인 및 근거 마련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순환아스콘)을 40%이상 의무 사용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환경표지 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성능인증제품, 단체표준인증제품 등 4가지 인증이 해당되나,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만 녹색제품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구매
-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는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공사추정가격이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구매 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구매

• 3단계 : 공사입찰 및 계약

-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공사계약 단계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도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사용 명시
-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 BTL 등의 공사발주 시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적용을 위한 가점 제공
- 공사주주 업체는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사용 계획을 발주 공공기관에 제출

• 4단계 : 공사시공

- 관급(지급)자재 조달구매 의뢰 시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구매 요청
-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사급자재 공급원 승인 시(하도급 공사 포함) 녹색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감리 및 관리 감독
-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시공사의 공사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 요청 시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 및 관리 감독
-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주기적으로 발주 공공기관에 제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7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7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보고서 작성 제출 서식 별지 제47호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에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투입현황 보고 의무

-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는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따라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구매·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발주 공공기관은 시공완료 후 정산 시 시공사에게 녹색제품 구매 내역(목록 및 증빙서류)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
- 계약담당자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녹색제품 구매집계부서에 제출

4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체계]



■ 자동 집계되는 실적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녹색장터에서 구매하는 실적은 시스템으로 실적이 자동 집계되어 에코스퀘어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납품요구일 기준 월 1회 실적 집계
 - ※ 에코스퀘어에 매월 중순경 전월 구매실적 반영
 - ※ 조합공통품목, 총액계약 등 녹색제품 식별이 불가할 경우 일반 실적으로 집계되며, 수정요청(인정요청)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실적으로 변경 가능
- 녹색장터: 2개 장터 운영 중이며, 구매 확정 후 1~2주 이내 실적 집계
 - ※ 녹색장터란? 녹색제품 구매 편의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녹색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

[녹색장터 운영 현황]

운영사	장터명	접속 경로	비고
그린주위	녹색장터+	greenproduct.co.kr	사회적기업, 여성기업(물품),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녹색사랑	녹색장터	greenproduct.kr	사회적기업, 여성기업(물품)

※ 녹색장터 운영사 확대 예정이며, 확대 시 교육, 공문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수동 집계가 필요한 실적

- **(대상 실적)** ① 나라장터 및 녹색장터 이외 판매처에서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② 용역업체에서 구매하거나, 사급자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간접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③ 나라장터에서 구매하였더라도 조합공통품목, 총액계약 등 연계 데이터 상 녹색제품 식별이 불가할 경우 등
- **(집계 방법)** 에코스퀘어(ecosq.or.kr)→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구매실적 수정요청 메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신청
- 수정요청은 ① 신규실적 추가요청, ② 녹색구매 인정요청, ③ 기존실적 예외요청 3가지로 분류
 - ※ 수정요청이란? 에코스퀘어에 집계되는 공공기관 총구매금액 또는 녹색제품 구매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

[수정요청 종류]

구분	설명
신규실적 추가요청	자동 실적 집계가 되지 않는 판매처에서 구입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집계를 요청하는 경우
녹색구매 인정요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였으나, 총액계약 등으로 녹색제품 식별이 불가하여 일반제품으로 집계된 실적을 녹색제품으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기존실적 예외요청	구매 예외 사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1호~5호)에 해당되어 일반제품으로 구매한 실적에 대한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 **(제출 서류)** 사유별 구매실적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수정요청 사유별 필요서류]

구분	사유	필요서류
신규실적 추가요청	나라장터 및 녹색장터 이외 구매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인증서 ※ 필요 시 견적서 등 녹색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용역(서비스)업체에서 구매, 사급자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인증서, 신청기관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계약서 ※ 필요 시 견적서 등 녹색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분	사유	필요서류
녹색구매 인정요청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 내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	• 증빙 불필요
	총액계약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	• 인증서, 녹색제품 규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조달청 계약서, 산출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 ※ 계약명 및 납품요구번호 기재 필수
	조합공동품목을 녹색제품으로 구매한 경우	• 인증서, 조달청 분할납품요구서, 조달청 검사검수요청서 또는 조달청 배정통보서 (배정변경통보서) 등
	그 밖에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	•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기존실적 예외요청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제3자 단가계약: 증빙 불필요 ※ 구매제품 분류번호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조회되는 필요 규격의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총액계약: 계약서, 산출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제3자 단가계약: 공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총액계약: 계약서, 산출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 및 공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조합공동품목: 분할납품요구서, 조달청 또는 조합 명의 공문 ※기초지자체 증빙 불요(관내구매)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공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기술 자문서, 시방서, 내부결재문 등)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실적부족분 증빙 가능한 결재문 또는 시스템 캡처 등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공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5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구매실적 제출 및 공표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 각 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기관별 실적에 맞도록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
※ 수립된 구매이행계획은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그 증빙을 제출

- 매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실적을 자체 점검 및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할 사항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품목별로 체계적으로 작성
 -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수립
 - ※ $\pm 3\%$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증감사유 작성 및 제출
 - ※ 에코스퀘어(녹색구매 정보)에서 '전년도 실적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품목별 구매 가능한 금액을 실적 대비 하여 입력
 - 법정 기한 미준수 시 직전년도 구매실적으로 구매이행계획 자동 수립

■ 녹색제품 구매실적

-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
- 녹색제품 구매실적 확정 시 유의해야할 사항
 -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이 올바르게 집계되었는지 확인
 - 전년도 대비 50%이상 증가하거나 30%이상 감소하는 경우 사유 명시
 - 법정 기한 미준수 시 에코스퀘어에 집계 실적으로 자동 확정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

- 최상위기관*에서 하위·소속기관의 구매이행계획·실적 검토 및 합산하여 에코스퀘어를 통해 제출
 - ※ 의무구매 대상 기관 중 가장 상위단계에 있는 기관(구매지침 붙임2에 해당하는 기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예시]

■ 국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을 예로 들면,

- 소속기관(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분쟁위 등): 각각 자체적으로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
- 본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본부 자체(소속기관 자료와 별도)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한 다음, 소속기관과 본부 자체의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합산하여 시스템에 제출
 - ※ 국가기관 산하기관이 공공기관 지정현황(기획재정부) 상 기타기관 등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본부 실적에 합산하지 않고 제출함에 유의
(ex.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실적 집계 및 제출)

■ 지방자치단체(서울 강동구청)를 예로 들면,

- 구청 직속기관(강동보건소 등) 및 주민센터: 각각 자체적으로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
- 구청(강동구청 본청): 구청 자체(소속기관 자료와 별도)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한 다음, 직속기관·주민센터와 구청 자체의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합산하여 시스템에 제출
※ 강동구청의 구매실적을 서울시청에서 평가 등의 사유로 관리할 수는 있지만, 강동구청의 구매실적은 서울시청의 실적에 합산되지 않음에 유의. 즉, 서울시청은 강동구청 등 각 구청의 실적은 합산하지 않고 제출함에 유의

■ 교육자치단체(서울 강동교육지원청)를 예로 들면,

- 지원청 직속기관(도서관 등) 및 소속학교: 각각 자체적으로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
- 지원청(강동교육지원청 본청): 지원청 자체(소속기관 자료와 별도) 구매실적과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한 다음, 직속기관과 지원청 자체의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합산하여 시스템에 제출
※ 서울시교육청은 강동교육지원청 등 각 소속 지역교육청의 구매실적은 합산하지 않고 제출함에 유의

■ 그 외 기관(한국환경공단)를 예로 들면,

- 각 지사: 각각 자체적으로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 가능
- 본사: 본사 자체(각 지사 자료와 별도)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한 다음, 각 지사와 본사의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합산하여 시스템에 제출

6 그 밖의 사항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다수의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 모두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제품으로서 동등한 의무구매 대상임
-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상제품의 품질, 가격 등을 비교하여 녹색제품 중 구매목적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구매

■ 인증 정보를 사전 참고

- 녹색제품 구매 시 제품정보(에코스퀘어)를 참고하여 제품명, 인증기간 확인 후 구매
- 구매하려는 제품이 인증 취소된 경우, 대체가능한 녹색제품으로 구매

■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활용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된 각 기관별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의 업무평가 자료로 활용(법 제10조)

[기관업무평가 반영 현황]

구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평가주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평가지기	n+1년 1월(예정)	n+1년 3월(예정)	n+1년 3월(예정)

※ 기관업무평가 지표 및 일정 등은 공공기관별 평가주체(기획재정부 및 행안부) 확정사항 확인 후 대응 필요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관 평가 또는 감사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이행 독려를 지속해나갈 예정
- 각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결과 대국민 공개

PART 03

참고사항



PART 03 참고사항

■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교육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능동적인 참여 필요
- 녹색구매 총괄담당자 뿐 아니라 실제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부서의 구매담당자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협업하여 공무원 대상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나라 배움터 정규과정 편성·운영('24.1~)
- 각 기관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매담당자 및 계약 건설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교육 실시
- 자체 녹색구매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원 요청 가능

■ 녹색제품 이행 실태조사 및 컨설팅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 대상 원인 파악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 해당 기관의 녹색구매 실적 모니터링 및 분석, 주요 품목별 구매 가이드 제공, 미구매 사유 파악 및 실적 제고방안 컨설팅 등 실시

■ 녹색구매 이행 우수기관 혜택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녹색구매 이행 기반 강화 및 구매 제고 유도를 위한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매해 실시하고 있음
- 기관유형별 녹색구매에 대한 구매실적, 구매향상, 구매노력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기관에 포상(8개 기관)

■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조성 지원

-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유형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녹색제품 구매금액 중 가장 큰 비중(약40%)을 차지함에 따라 지방자체단체 녹색구매 이행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참여지자체별 녹색구매 목표수립, 이행과제 발굴 및 실천 지원, 중점품목 도출 및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지원 등 실시

■ 녹색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녹색장터) 운영 지원

- 공공기관의 중앙조달(조달청 이용) 외 녹색제품 직접구매 시 구매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품판매·자동실적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 쇼핑몰 ‘녹색장터’ 운영 지원 중
- 녹색장터에서 물품 구매 시 별도의 실적 추가요청 절차 없이 에코스퀘어로 자동 집계됨

■ 협조 요청사항

- 본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극 이행
- 용역 및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본 지침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계약서, 시방서 등에 적극 반영
- 특히, 용역업체가 과업수행 완료 후 녹색제품 구매내역과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관리·감독 필요
- 사급자재 사용 시 구매실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에코스퀘어를 통해 실적 추가요청 진행
 - ※ 특히 청사 등이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받았을 경우, 해당 공사에서 구매된 녹색제품 건설자재를 누락 없이 구매실적 반영 필요
- 소속·산하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관련 사항 지도·감독
- 각 국가기관은 소속·산하기관에 대하여 감사 시 또는 자체계획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을 수시점검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구매실적 반영 및 우수구매 담당자에 대한 혜택 부여
-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운영
 - ※ 에코스퀘어(www.ecosq.or.kr)→알림센터→공지/공고→자료실에서 표준조례(안) 확인 가능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독려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 표준조례(안)”을 마련, '06년 4월 시달('15년 5월 개정 시달)한 바 있음
- 또한, 교육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지자체 녹색제품 구매촉진 표준조례(안)”을 '13년 7월 시달한 바 있음
-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구매요청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 구매가 가능한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 ※ 관련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실적 기한 엄수
- 공공기관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후 2월말까지 당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공표하고, 이를 에코스퀘어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에코스퀘어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안내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결과를 매년 대국민 공개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go.kr)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표 데이터로 공시하여야 함
- 기관 고유아이디 사용자만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 기관 업무평가 결과 확인 등 녹색구매 정보 메뉴 이용 가능
- 상위기관에서는 소속/하위기관의 로그인 정보(기관고유아이디, 최초비밀번호) 확인 가능
 - ※ '24.6월 이전 가입자는 메뉴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탈퇴 요망
 - ※ 소속/하위기관에서 최초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을 경우 상위기관에서는 비밀번호 확인 불가
- 에코스퀘어 이용을 위한 기관코드 조회 방법
 - ① 나라장터(g2b.go.kr)에 접속
 - ② 입찰공고검색에 기관명에서 [수요기관]을 선택한 뒤 돋보기 클릭
 - ③ [수요기관명]을 입력한 뒤 검색을 클릭하여 조회
 - ④ 조회되지 않는 기관은 [기관등록신청]메뉴에서 [행정안전부 기관코드 검색]을 이용하여 조회 (code.go.kr)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
-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우 03367)
- **전화번호:** 02-2284-1065

참고사항 1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 법령 및 정책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p>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5., 2020. 1. 29.></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09. 4. 1., 2010. 1. 13., 2011. 4. 5., 2021. 9.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p>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15. 3. 30., 2024. 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관 6. 다음 각 목의 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p>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p>	<p>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p>	<p>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p>
	<p>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중앙회 라.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 상공회의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전문개정 2012. 7. 31.]</p>	
<p>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28., 2013. 3. 23., 2020. 1. 29., 2021. 9. 24., 2025.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본조신설 2011. 4.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p>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개정 2011. 4. 5.></p> <p>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 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p> <p>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1. 4. 5.]</p>		
<p>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p> <p>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개정 2010. 2. 4., 2011. 4. 5., 2011. 7. 21., 2025. 10. 1.></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개정 2011. 4. 5., 2025.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4. 녹색제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p> <p>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개정 2016. 11. 29., 2025. 10. 1.></p> <p>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1. 4. 5.]		
제5조 삭제 <2010. 2. 4.>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 4. 5.]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p>②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p>	<p>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p> <p>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p>[본조신설 2014. 3. 18.]</p>	
<p>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25. 10. 1.></p>	<p>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전문개정 2012. 7. 31.]</p>	

<p>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p>	<p>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p>	<p>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p>
<p>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p> <p>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2. 2. 1.></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5. 10. 1.> [제목개정 2011. 4. 5.]</p>	<p>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p> <p>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5. 10. 1.></p> <p>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p>	
<p>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p> <p>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p> <p>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p> <p>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p>	<p>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p> <p>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 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p> <p>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p>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4. 5.]</p>		
<p>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25.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 실적의 반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목개정 2011. 4. 5.]</p>		
<p>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 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목개정 2011. 4. 5.]</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p>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p> <p>①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12. 30.></p> <p>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녹색제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25. 10. 1.></p>		
<p>제13조 삭제<2009. 1. 7.></p>		
<p>제14조(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p> <p>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25. 10. 1.></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4. 5.]</p>		
<p>제14조의2(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p> <p>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품질·안정성·환경친화성 및 생산·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p> <p>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이행계획과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 10. 1.></p>	<p>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p> <p>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p> <p>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7. 31.]</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p>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녹색제품의 품질·안전성·환경친화성 및 구매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4. 5.]</p>		
<p>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p> <p>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개정 2006. 9. 27., 2010. 2. 4., 2011. 4.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녹색제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4. 국내·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 획득 지원 5. 녹색제품의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6.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7. 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9. 녹색제품의 홍보·교육 지원 10.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p>②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신설 2006. 9. 27., 2011. 4. 5.> [제목개정 2011. 4. 5.]</p>	<p>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p> <p>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 종합대상 2. 녹색제품 우수부문상(생산·유통·구매 등) <p>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p> <p><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12. 7. 31.]</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p>제15조의2(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p> <p>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25.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판매 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 2. 녹색제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 3. 새로운 녹색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p> <p>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 <p>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25. 10. 1.> [본조신설 2010. 2. 4.] [제목개정 2011. 4. 5.]</p>		
<p>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p> <p>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p> <p>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p>		<p>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p> <p>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을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p>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1. 4. 5.]</p>		<p>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 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p> <p>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p>
<p>제15조의4(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 제조·유통 사업자의 국외 시장 공동 개척 2.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 3. 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p>[본조신설 2011. 4. 5.]</p>		
<p>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2011. 4. 5., 2025. 10. 1.></p>		
<p>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4. 5., 2025. 10. 1.></p>	<p>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 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p>	

<p>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p>	<p>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p>	<p>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p>
<p>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25. 10. 1.></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p> <p>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3. 전문 교수요원의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7. 31.]</p>	<p>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p>
<p>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2025. 10. 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p>	<p>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2.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녹색제품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p>	

<p>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을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p>	<p>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p>	<p>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p>
<p>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 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 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p> <p>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p> <p>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본조신설 2011. 4. 5.]</p>	<p>1. 정기평가: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연 1회 평가. 다만, 제 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2. 종합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상태를 3년에 1회 평가</p> <p>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p> <p>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p> <p>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p> <p>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7. 31.]</p> <p>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절차)</p> <p>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7. 31.]</p>	

<p>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을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p>	<p>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p>	<p>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p>
<p>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p> <p>①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 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25. 10. 1.></p> <p>④ 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녹색매장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p>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p> <p>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3. 30.></p> <p>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를 말한다.</p> <p>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7. 31.]</p> <p>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p>	<p>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p> <p>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24.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목표를 수립하는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2. 녹색제품의 판매 확대 및 홍보 등 녹색제품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오염저감 조치를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 4. 환경경영에 대한 고객과의 인식 공유, 고객 참여 촉진 등 고객 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 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12. 27., 2025. 10. 1.> [전문개정 2012. 8. 2.]</p> <p>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p> <p>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2.></p> <p>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신청인의 매장이 제5조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매장을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본조신설 2012. 7. 31.]	④ 기술원장은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제18조의2(보고·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및운영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21.]		
제18조의3(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녹색매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25. 10. 1.>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개정 2025. 10. 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의 접수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제품 정보 제공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09. 1. 7., 2011. 4. 28., 2013. 7. 16., 2015. 12. 1., 2025. 10. 1.> [제18조에서 이동 <2006. 9. 27.>]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교육 4. 삭제<2015. 3. 30.> 5. 삭제<2015. 3. 30.>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7. 제12조에 따른 정보 관리 및 정보 자료집 제공 [전문개정 2012. 7. 31.]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를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 삭제<2012. 2. 1.>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1.][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p>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p> <p>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p> <p>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p>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2.></p> <p>③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p>	<p>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p> <p>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p> <p><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7. 10. 17., 2025.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 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전문개정 2010. 5. 18.] 	<p>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p> <p>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33호 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개정 2013.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9.]</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④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9. 6. 9.]		

※ 주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성능인증제품, 단체표준제품 등 4가지 인증이 해당되나,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만 녹색제품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및 지침

3-1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시행 2017.9.27.][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 2017. 9. 27. 일부개정]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라.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아.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매립시설 복토용 (일일·중간·최종복토)	
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제품 소요량의 40%이상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아.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품 및 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3-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5.3.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3.5., 일부개정]

[별지 제47호 서식]

(제 1 쪽)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품 명	규 격	공급원	승인일	비고

(제 2 쪽)

2 주요자재 투입현황

2.1 관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2 사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3 녹색 건설자재 (환경표지 · GR마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

4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 2025.3.19.] [국무총리훈령 제884호, 2025.3.19., 전부개정]

제5조(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은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참고사항 2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현황('25년 10월 기준)

구분	기관수	대상 기관
합계	926	
국가기관	56	<p>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사무처,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 가족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 가족부, 우주항공청,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병관리청, 국가데이터처, 통일부, 지식 재산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기후에너지환경부</p> <p>※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p>
지방·교육 자치단체	438	<p><지방자치단체> 245</p> <p>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군위군,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가평군, 고양특례시, 과천시, 광명시, 경기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특례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특례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원군, 창원특례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p>

구분	기관수	대상 기관
지방·교육 자치단체	438	<p><교육자치단체> 193</p> <p>서울특별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달성교육지원청, 군위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가평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교육지원청, 원주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동해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청, 삼척교육지원청, 홍천교육지원청, 횡성교육지원청, 영월교육지원청, 평창교육지원청, 정선교육지원청, 철원교육지원청, 화천교육지원청, 양구교육지원청, 인제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공주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교육지원청, 군산교육지원청, 익산교육지원청, 정읍교육지원청, 남원교육지원청, 김제교육지원청, 완주교육지원청, 진안교육지원청, 무주교육지원청, 장수교육지원청, 임실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 고창교육지원청, 부안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교육지원청, 여수교육지원청, 순천교육지원청, 나주교육지원청, 광양교육지원청, 담양교육지원청, 곡성교육지원청, 구례교육지원청, 고흥교육지원청, 보성교육지원청, 화순교육지원청, 장흥교육지원청, 강진교육지원청, 해남교육지원청, 영암교육지원청, 무안교육지원청, 함평교육지원청, 영광교육지원청, 장성교육지원청, 완도교육지원청, 진도교육지원청, 신안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 경주교육지원청, 김천교육지원청, 안동교육지원청, 구미교육지원청, 영주교육지원청, 영천교육지원청, 상주교육지원청, 문경교육지원청, 경산교육지원청, 의성교육지원청, 청송교육지원청, 영양교육지원청, 영덕교육지원청, 청도교육지원청, 고령교육지원청, 성주교육지원청, 칠곡교육지원청, 예천교육지원청, 봉화교육지원청, 울진교육지원청, 울릉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밀양교육지원청, 거제교육지원청, 양산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창녕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남해교육지원청, 하동교육지원청, 산청교육지원청, 함양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합천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p>

구분	기관수	대상 기관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주)강원랜드 (기후부)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7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기후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 한전KPS(주)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	12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45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후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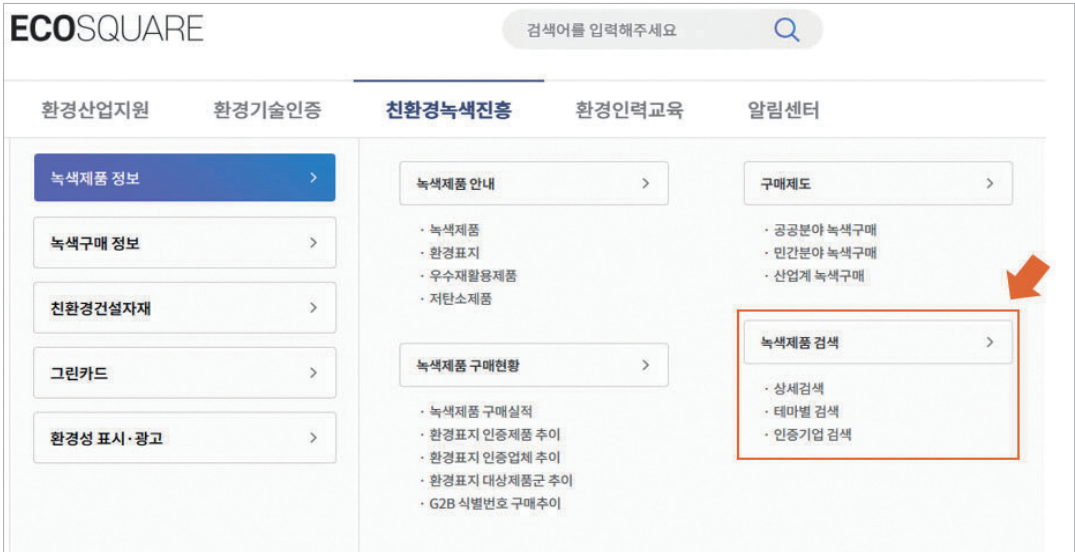
구분	기관수	대상 기관
지방 공기업	47	(서울)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대구)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인천)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광주) 광주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관광공사, 광주환경공단 (대전)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세종)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경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강원) 강원개발공사 (충북) 충북개발공사 (충남) 충청남도개발공사 (전북) 전북개발공사 (전남) 전남개발공사 (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남) 경상남도개발공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광역직영, 기초직영 공사 공단은 상위기관(광역시 도 및 기초지자체)에 포함
지방 의료원	30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강원특별 자치도원주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강원 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순천 의료원, 강진의료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마산의료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지자체 출연 연구원	16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 인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울산연구원, 경기연구원, 강원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연구원, 광주연구원, 전남 연구원, 경북연구원, 경남연구원, 제주연구원
기타 공공기관	243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 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 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 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분	기관수	대상 기관
기타 공공기관	243	<p>(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p> <p>(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p> <p>(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p> <p>(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p> <p>(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p> <p>(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p> <p>(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p> <p>(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p> <p>(산업부)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대한석탄공사</p> <p>(복지부)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식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학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p> <p>(기후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p> <p>(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p> <p>(성평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p> <p>(국토부)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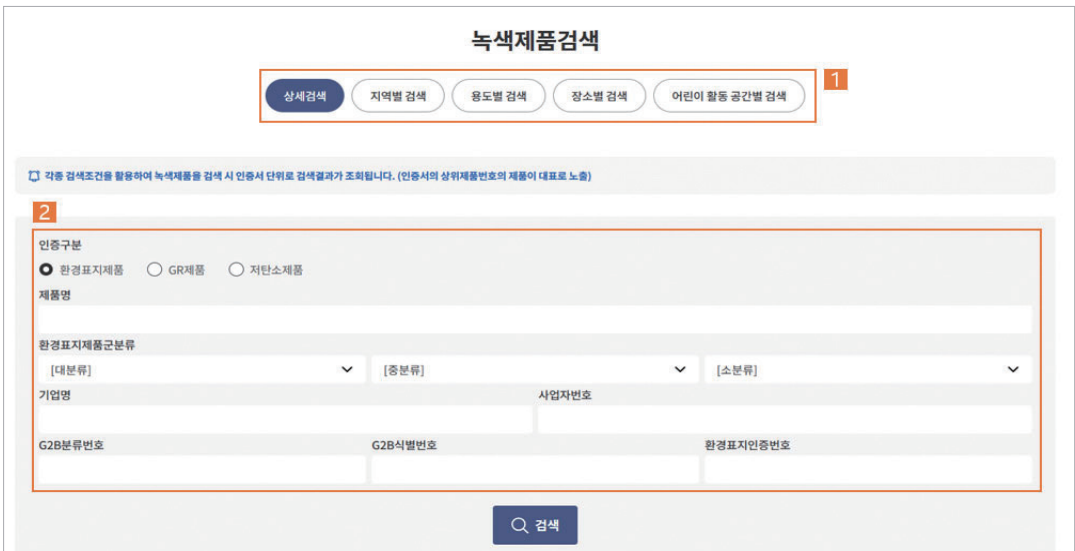
구분	기관수	대상 기관
기타 공공기관	243	<p>(해수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p> <p>(중기부)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p> <p>(보훈부)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p> <p>(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p> <p>(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p> <p>(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p> <p>(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p> <p>(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p> <p>(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p> <p>(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p> <p>(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p> <p>(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p> <p>(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p> <p>(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p> <p>(지재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p> <p>(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p> <p>(데이터처) (재)한국통계정보원</p> <p>(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p>
특수법인	8	<p>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방송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은행</p>

참고사항 3 녹색제품 검색방법

1 에코스퀘어(ecosq.or.kr)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제품 정보→녹색제품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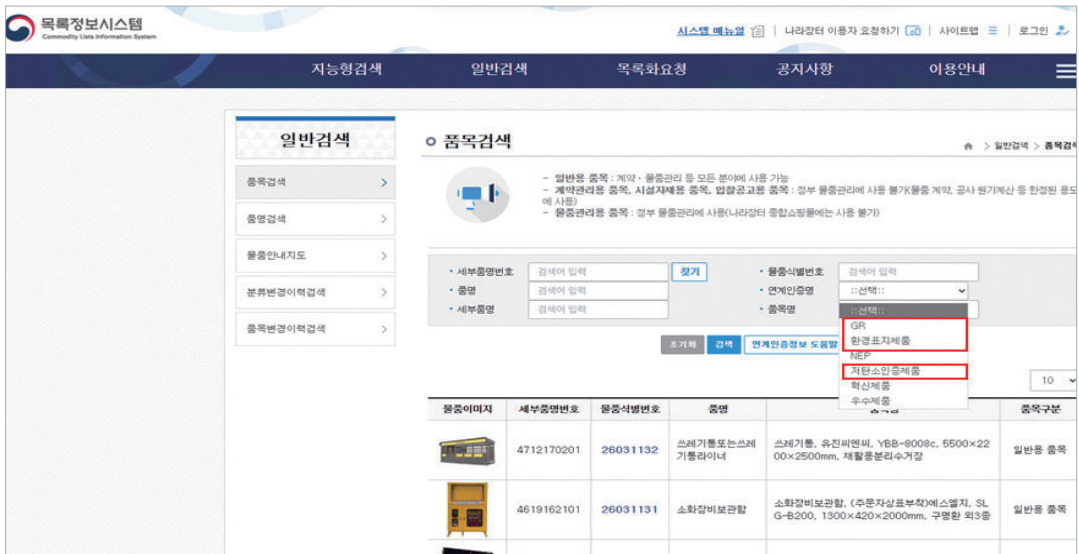
① 상세검색/테마별(지역별, 용도별, 장소별, 어린이활동공간별) 녹색제품 검색

② 인증구분/제품명/기업명/인증번호 등 다양한 조건으로 녹색제품 검색

2 목록정보시스템(goods.g2b.go.kr)



① 일반검색→품목검색



① 연계인증명(환경표지제품, 저탄소인증제품, GR) 선택

② 품명번호/식별번호/품명/품목명 등 다양한 조건으로 녹색제품 검색

※ 식별번호를 부여받고 조달청 인증표기 신청한 녹색제품만 검색 가능

참고사항 4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녹색제품 구매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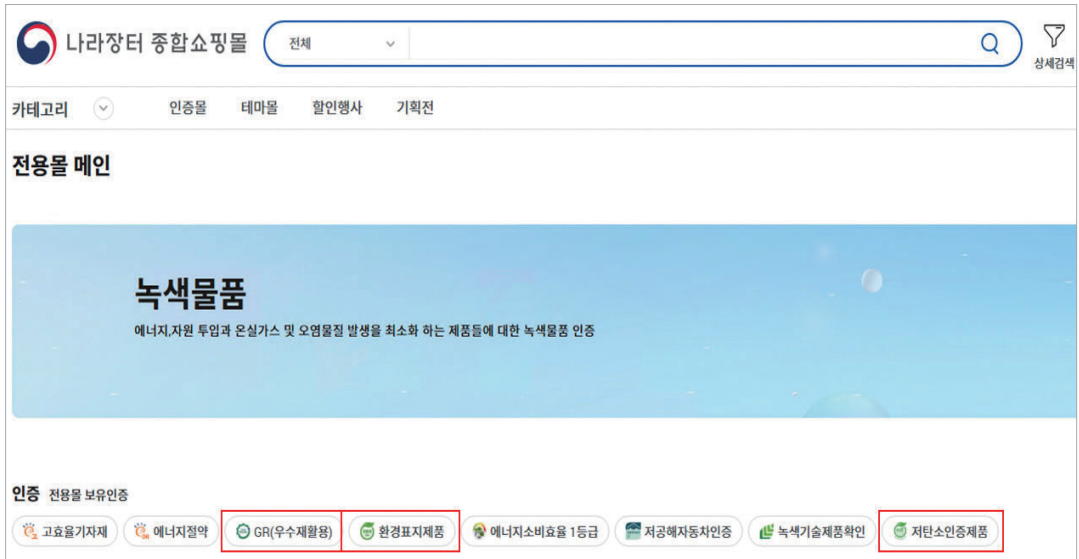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접속(shopping.g2b.go.kr)



- 로그인-공공기관 공인인증서 사용



- 인증물-‘녹색물품’ 선택



- 녹색물품 카테고리-‘환경표지제품’, 저탄소인증제품, ‘GR’ 선택

도목/건축/자재			
건축자재 목재문 금속제창 미장벽돌 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덱 합성고분자방수시트 벽천장충흡음재	단열재 고무발포단열재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도로포장재 도로포장용보수재 도로포장용슬래그	도장용품 노면표지용페인트 선박용페인트 중방식페인트 수성페인트
맨홀 석제맨홀뚜껑 콘크리트맨홀블록	목재 목재판재 목재덱 합성목재	각종감관 및 주철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바닥재 및 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시트형탄성포장재 액세스플로어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플로어링보드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방수재 기타도막방수재 액체형구체방수재 무기질도막방수재	방음벽 및 방음관 흡음형방음벽및방음관	배수로자재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폴리에틸렌제물받이	석재 점토바닥벽돌 콘크리트벽돌

▶ 조회된 상품 카테고리 중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선택

▶ 구매하려는 상품 클릭 후 주문

참고사항 5 '녹색장터'를 통한 녹색제품 구매하기

■ 녹색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 “녹색장터”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접근성 및 구매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제품검색·전자상거래·자동실적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녹색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
 - ‘녹색장터’를 통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에코스퀘어와 연계되어 자동 집계
 - 조달청 나라장터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달청 분류체계를 최대한 반영
 - 타 법률에 의한 우선구매제도(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중복인증 제품 구매 가능

■ 이용방법

- 에코스퀘어(ecosq.or.kr) - 친환경녹색진흥에서 녹색장터 확인 가능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연계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OX퀴즈로 풀어보는 환경성 표시·광고 셀프테스트

시작하기 >

04 - 04

녹색제품 구매실적

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실적

연도	조달구매실적	조달구매실적	계상지
2020년	38,080 억원		
2021년	38,533 억원		
2022년	43,684 억원		
2023년	47,606 억원		
2024년	45,755 억원		

그린카드 공공시설 할인 서비스

- 각 쇼핑몰별 신규 회원가입 후 이용
 - 자동 실적 집계를 위해 에코스퀘어에 기관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에코스퀘어와 동일한 기관코드로 녹색장터 회원가입 후 물품구매
- 유의사항
 - 녹색장터는 각각 별개의 쇼핑몰로 판매 물품 및 가격이 쇼핑몰별로 모두 상이
 - 부서·과별로 가입 시, 부서별로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가능(단, 조달 구매실적은 부서별로 실적 집계 불가함)
 - 녹색장터 구매실적은 구매 확정 후 1~2일에서 최대 2주 이내 연계

참고사항 6 에코스퀘어(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시스템) 사용방법

1 기관등록 및 변경

■ 기관등록

기관등록 신청

기관등록신청 방법

-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자 정보는 기관대표아이디 정보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 *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는 휴대폰 인증 시 자동입력됩니다.**
- * 차상위 기관명(등록하려는 기관의 상위기관명)을 검색하여 입력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 * 기관 등록 신청 승인 후 신청자 휴대전화번호로 기관 아이디, 비밀번호 안내드립니다.
- * 기관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관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관정보 조달청 수요기관코드 검색 행안부 기관코드 검색

기관명*	기관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차상위기관명*	최상위기관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5px;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type="text"/>

기관 주소* 주소찾기

신청

- ① 에코스퀘어(ecosq.or.kr) 접속→[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 클릭
- ② [기관등록 신청] 클릭
- ③ 기관등록 대상 기관정보 입력
- ④ “기관코드”는 조달청 수요기관 코드 작성, 조달청 수요기관 코드가 없는 경우 ‘행안부 기관코드 검색 (code.go.kr)’을 클릭하여 검색
 - ※ 조달청 수요기관 코드 또는 행안부 기관코드 미입력 시 구매실적 집계 불가
 - ※ 기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수요기관 코드 검색 또는 행안부 기관코드 검색 클릭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확인
- ⑤ [신청] 클릭

⑥ 제출자 정보 입력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선택

⑧ [저장] 클릭

※ 제출자 정보로 고유아이디 생성하여 문자 발송(별도 회원가입 절차 불필요)

⑧ 기관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 진행 후 확인

※ 승인 시 대표 신청자 정보로 기관 고유아이디 생성(별도 회원가입 불필요)

※ 초기 아이디, 비밀번호는 입력된 대표 담당자의 이메일과 휴대폰번호로 발송

■ 기관변경

- ① 로그인 후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기관변경 신청] 클릭
- ② 변경 전 기관정보 검색을 통해 변경이 필요한 기관 선택
- ③ 변경 후 기관정보에 현행 기관정보 입력
 - ※ 기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수요기관 코드 검색 또는 행안부 기관코드 검색 클릭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확인
- ④ 변경 전 기관코드가 행안부 표준코드관리시스템 또는 조달청 수요기관 정보에서 폐지되지 않은 경우, 사유작성 후 신청
- ⑤ 변경대상기관이 다수일 경우, 기관 통폐합, 기관 폐지의 경우 [표준양식다운로드] 하여 기관 변경 전/후 정보 입력 후 업로드

※ 해당 신청은 기관변경에 대한 정보만 신청가능합니다.(신규기관등록 신청 불가)

※ 최상위기관의 기관변경일 경우 액셀신청이 불가하며 단일 기관변경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 통합되어 귀속되는 기관이 신규기관일경우 기관등록신청으로 기관 등록 이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5라인까지는 샘플데이터이므로 6라인부터 작성 부탁드립니다.(순번은 1부터 시작)

변경구분 (필수)	순번 (필수)	변경전 기관코드 (필수)	변경전 기관명 (필수)	변경이후 기관코드 (필수) * 폐지기관일경우 필수제외	변경이후 기관명 (필수) * 통폐합, 폐지기관일 경우 필수제외	주 소 (필수) * 통폐합, 폐지 기관일경우 필 수제외	상세주소 (필수) * 통폐합, 폐지기관일경우 필수제외
단순변경	1	9999999	변경이전기관명	BGGGGG1	변경이후기관명1	125-240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 290(613-2번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통폐합	2	9999998	통폐합이전기관명	BGGGGG2			
폐지	3	9999997	폐지기관명				
단순변경		A123456	테스트	B123456	테스트 변경 후	125-240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 290(613-2번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통폐합		ABCDEFG	통폐합이전기관명	ABCDEFH	통폐합이후기관명		
폐지		1234567	폐지기관명				

- ⑥ 변경구분 선택 후 구분별 필수정보 입력
- ⑦ 저장 후 에코스퀘어-기관변경 페이지에서 해당 양식 첨부 후 신청

■ 기관 등록/변경 신청결과

기관정보변경 신청 내역

신청구분 [전제]
신청결과 [전제]

반려사유 X

자상위기관을: 관역시 복구로 넣어 신청해야 합니다.

검색

총 2 건 엑셀다운로드 기관정보변경 신청

번호	신청구분	신청일	신청상태	소속 상위기관	변경 전		
					기관명	기관코드	
14790	신규	2023.02.17	반려사유	BZZZZZ	-	-	관역시복구시설관리
12918	변경	2022.12.14	반려사유	BYYYYY	최상위기관(TEST)	9999999	변경테스트기관명1

<< < 1 > >>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기관등록/변경 내역] 클릭
- ② 조회조건(신청구분, 신청결과)에 따라 조회 가능
- ③ 반려 처리된 경우 사유를 확인하여, 보완 후 재신청

■ 기관코드 검색방법

기관등록 신청

기관등록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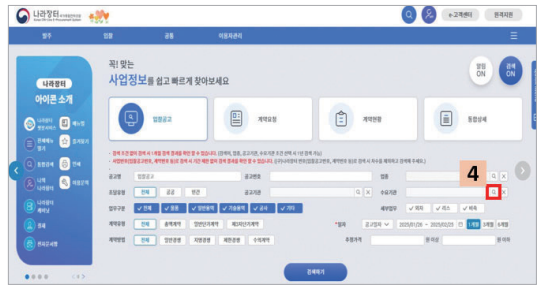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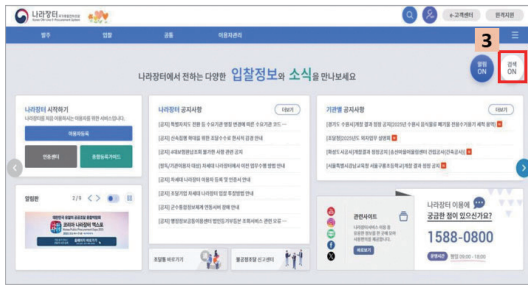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자 정보는 기관대표아이디 정보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 **※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는 휴대폰 인증 시 자동입력됩니다.**
- 자상위 기관명(등록하려는 기관의 상위기관명)을 검색하여 입력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 기관 등록 신청 승인 후 신청자 휴대전화번호로 기관 아이디, 비밀번호 안내드립니다.
- 기관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관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관정보
[조달청 수요기관 코드 검색](#)
[행안부 기관코드 검색](#)

기관명*	기관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자상위기관명*	최상위기관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style="text-align: right; border-bottom: none; border-right: none;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width: 10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000; background-color: #000; color: #fff;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type="button" value="Q"/>	<input type="text"/>

기관 주소*
주소찾기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기관등록신청] 또는 [기관변경신청]
- ② 조달청 수요기관 코드 검색 또는 행안부 기관코드 검색 클릭



③ 나라장터 접속 - [검색ON]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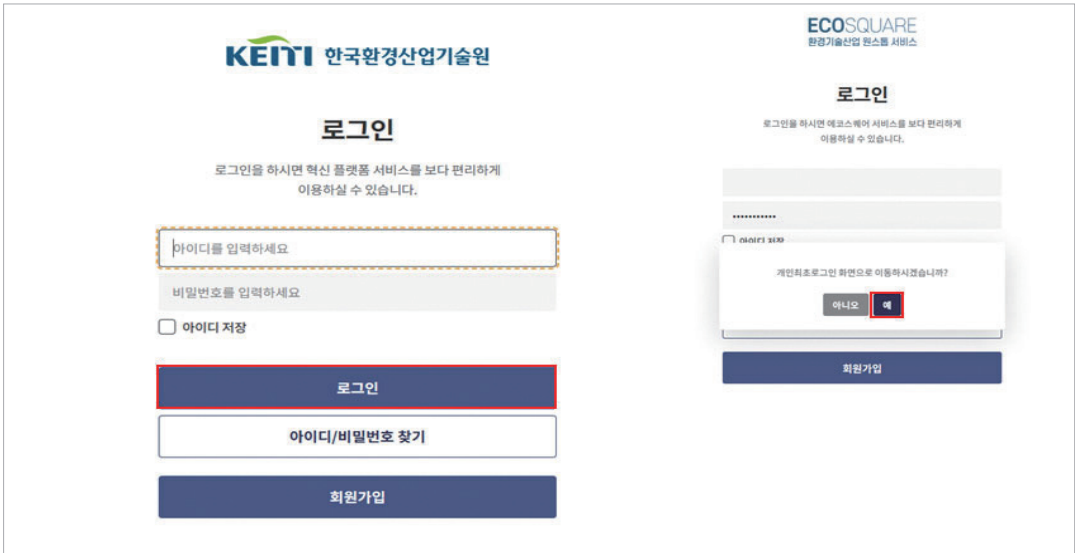
④ [돋보기] 클릭 후 기관명 검색

전체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입력하신 기관에 속하는 전체 기관명으로 검색어 됩니다.			
최상위기관명	한글 기관명 입력	* 입력하신 기관에 속하는 최상위 기관명만 검색어 됩니다.			
기관선택	기관코드(7자리)입력	<input checked="" type="radio"/> 하위부서까지 검색 <input type="radio"/> 본부만 검색			
기관유형선택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소재지선택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폐지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전체 <input type="radio"/> 현존 <input type="radio"/> 폐지				
전체선택	필하는 출력항목을 아래박스에서 체크하세요. * 폐지구분항목 - 0 - 현존, 1 - 폐지				
✓ 새로선택	✓ 새로선택	✓ 새로선택	✓ 새로선택	✓ 새로선택	✓ 새로선택
✓ 차수	✓ 시명	✓ 최상위기관코드	✓ 최상위기관코드	✓ 소속기관차수	✓ 소속기관차수
✓ 대표기관코드	✓ 기관장직급명	✓ 행정동코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팩스번호
✓ 기관유형	✓ 이관기관	✓ 생성일	✓ 폐지일	✓ 최종작업일	✓ 최종작업일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여부		✓ 폐지구분			
변경기간		일주일	1개월	3개월	초기화
		계가장현황	변경관리방안	초기화	
		기관코드 조회자료	기관코드 전체자료		
기관코드	전체기관명	최상위기관명	폐지구분	등록자	등록자
8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존		운영자
D54400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	감사실	현존		
D54400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홍보비서실	홍보비서실	폐지		
D54400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영기획단	경영기획단	폐지		
D54400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영기획단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폐지		

⑤ 행안부 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하위기관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전체기관명에 최상위기관입력 후 검색하여 하위기관 목록 확인

2 로그인

■ 최초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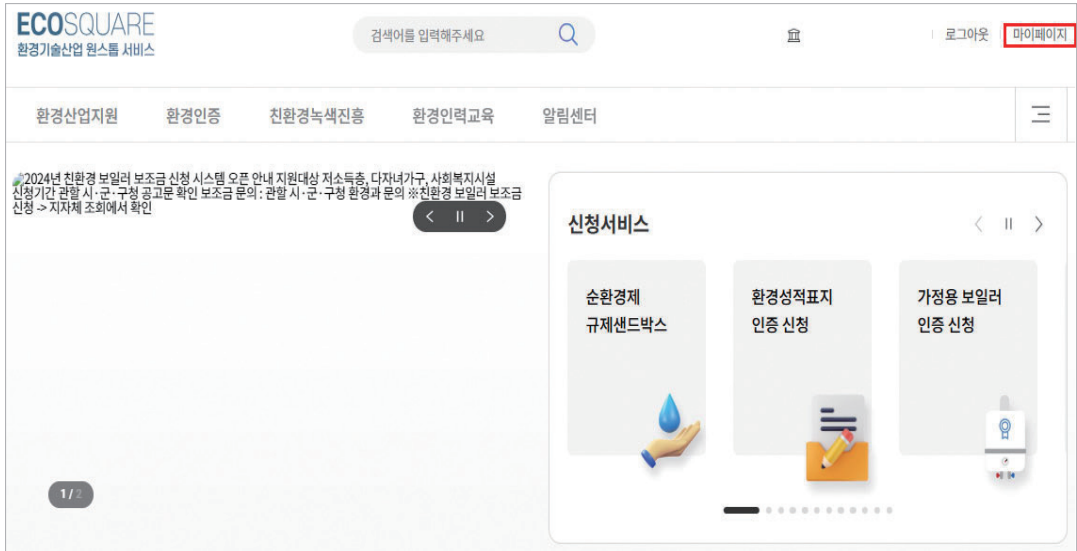


- ① 에코스퀘어 오른쪽 상단 [로그인]→[기관회원 로그인] 클릭
- ② 기관 고유 ID 및 PW 입력하여 로그인
- ③ 기관 최초 인증 화면으로 이동→기관인증서 최초 1회 필수 인증
 - ※ 기존 녹색구매정보시스템 본인 ID/PW 입력하여 로그인 후 왼쪽 메뉴→녹색구매정보→구매기관 소속정보→기관 고유 ID 및 최초 PW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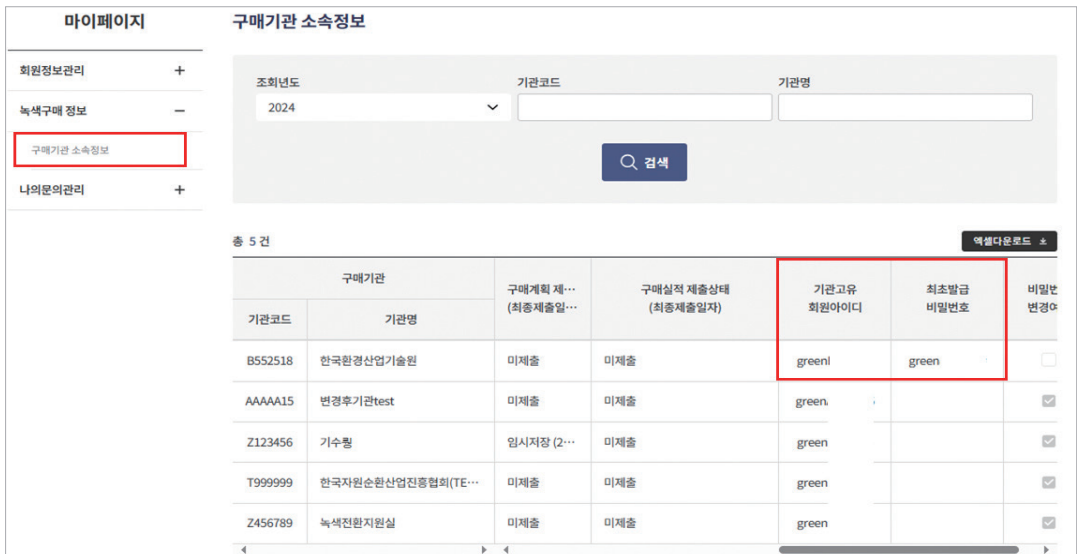


- ④ 약관재동의→약관동의→본인인증→회원정보 확인→정보확인 완료 절차 진행
 - ※ 최초 로그인 이후 ID/PW만 입력하여 로그인 가능

■ 기관 고유아이디 확인 방법



①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접속



② 녹색구매 정보-구매기관 소속정보-스크롤 이동 후 기관고유 회원 아이디, 최초발급 비밀번호 확인

※ '24년 8월 이후 기관고유 회원 아이디 외 기존가입 계정으로 기관 업무처리 불가

※ 담당자 변경 시 별도 아이디 생성하지 않고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관리자 정보 수정하여 사용 가능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입력-직접입력 방법

구매이행계획 제출

1. 계획입력
2. 계획 승인/반려
3. 계획 합산/제출
4. 계획 공표 현황
5. 시군구 계획입력 현황

· 2018, 2019, 2020, 2021년도 실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입니다.

기준연도
승인구분
하위기관

2024
[전체]

Q 검색

총 5 건 계획입력 엑셀다운로드

계획연도	기관명	총구매(일반+녹색구매)(A)		녹색구매(B)		녹색 구매비율(B/A)		승인구분	중간 여부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계획입력 현황]→[계획입력] 클릭

총합계			총구매(일반+녹색구매)(A)		녹색구매(B)		녹색 구매비율(B/A)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
							...	
차별			총구매(일반+녹색구매)(A)		녹색구매(B)		녹색 구매비율(B/A)	
부서명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
사무/교육/영생/가전	OA판막이(파라핀)	OA판막이	25	3,837,200	12	3,563,200	48	93.4
		가구						
		보관함 가구	32	10,132,100	32	10,132,100	100	100
		책자	73	24,720,000	70	23,282,000	95.9	94.2
		수납가구	0	0	0	0	0	0
		책상(다자)	11	5,635,000	11	5,635,000	100	100
		침대 및 침대매트...	0	0	0	0	0	0
		기타 가구 및 부속품	0	0	0	0	0	0
		세탁기	0	0	0	0	0	0
		세탁세탁기	0	0	0	0	0	0
		에어컨(세내)	0	0	0	0	0	0
		급식분배기(강판...	0	0	0	0	0	0
		냉매서전 및 기타...	3	3,670,000	3	3,670,000	100	100
		냉매서전 및 기타...	0	0	0	0	0	0
합계			2,333	694,495,150	1,174	255,983,750	50.3	36.9

② 각 품목별 총구매수량/금액, 녹색구매수량/금액 입력(금액은 원단위)

※ [전년도 실적 불러오기] 버튼 클릭 시, 집계된 직전년도 실적이 입력됨→입력된 실적을 참고로 구매이행계획 작성

③ 작성 완료 후 [임시저장]→[1차 제출]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입력-표준양식 입력 방법

구매이행계획 제출

1. 계획입력
2. 계획 승인/반려
3. 계획 합산/제출
4. 계획 공표 현황
5. 시군구 계획입력 현황

(A) : 일반구매와 녹색구매를 합친 총구매실적내역
 (B) : 녹색제품(환경표지, GR마크, 저탄소인증 제품) 구매내역
 · 사용자의 환경(PC, 네트워크 등)에 따라 표준양식 업로드가 안되실 경우, 화면에 직접 입력해주시시오.
 · 2018, 2019, 2020년도 실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4년 계획

총합계 표준양식다운로드 > 표준양식업로드 > 액셀다운로드 >

총구매(일반+녹색구매)(A)		녹색구매(B)		녹색 구매비율(B/A)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계획입력 현황]→[계획입력] 클릭
- ② 표준양식 다운로드

2024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등록 표준양식														
□ 거래 및 작성자 정보														
기관명	부서	담당자 및 직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 계획 작성표														
<주의사항> * 금액입력 부분은 단위를 고려하여 입력드시 작성분에 맞게 기재하십시오. *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금액년도 녹색구매 예산을 작성하십시오. * 수직입력 하십시오.														
											(단위 : 원)			
녹색제품 분류		목적용기				녹색제품 구매계획 (목적용기)				총합계 (목적용기)		비율산정 (목적용기)		
		총구매 수량	총구매 금액	녹색구매 수량	녹색구매 금액	총구매(A) 수량	총구매(A) 금액	녹색구매(B) 수량	녹색구매(B) 금액	수량(%)	비율(%)			
기부	OA전자기(태양광)													
	보안용 기구													
	표지													
	휴대기구													
	책(일지)													
	총합 및 총합비율(%)													

- ③ 표준양식(Excel)의 녹색제품 구매계획 입력란에 수량/금액 입력
 - ※ 입력불가란은 공란으로 비워 둠
 - ※ 금액란에 반드시 원단위로 입력, 연산자 사용/엑셀양식 변경 불가
- ④ 파일 저장 후[표준양식 업로드]
- ⑤ 업로드 완료 후[임시저장]→[제출자 정보 입력 후 저장]
- ⑥ [제출]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증감사유 입력

구매계획(증감사유입력)

전년도 실적 대비 구매실적이 3%이상 감소하거나, 3%이상 증가한 경우 증감사유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구매계획 최종제출 완료)

구매계획(증감사유)는 합산계획이 아닌 본청계획에 대한 증감사유입니다.

총구매실적 대비

전년도 구매실적			당해년도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실적 증감비율(%)
총구매실적(원)	녹색구매실적(원)	녹색구매 비율(%)	총구매실적(원)	녹색구매실적(원)	녹색구매 비율(%)	
694,499,150	255,983,750	36.9	655,977,050	218,899,650	33.4	-14.5

감소 사유*

녹색제품 구매실적 감소 사유

사유	<input type="checkbox"/> 기관 전체 예산 감소 <input type="checkbox"/> 건설공사 등 대규모 공사 감소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집계실적이 예산대비 과대 <input type="checkbox"/> 당해년도 기관 예산 미확정에 따라 구매계획 수립이 어려움
기타(의견작성)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① 전년도 실적 대비 구매계획이 3% 이상 증가/감소한 경우 증감사유 입력
- ② 사유 선택 후 [제출] 클릭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승인 및 반려-상위기관

구매이행계획 제출

1. 계획입력
2. 계획 승인/반려
3. 계획 합산/제출
4. 계획 공표 현황
5. 시군구 계획입력 현황

기관명을 선택하시면 승인 및 반려처리가 가능합니다.
 승인구분으로 조회 후 승인/반려 버튼으로 다중 승인이 가능합니다.
 2018, 2019, 2020, 2021년도 실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입니다.

기준연도 승인구분 하위기관
 2024 [전체]

총 2 건 엑셀다운로드 >

<input type="checkbox"/>	계획연도	기관명	총구매(일반+녹색구매)(A)		녹색구매(B)		녹색 구매비율(B/A)		승인구분	증감 여부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		
<input type="checkbox"/>	2024	기술원	1	1	1	1	100	100	상위기관 반려	-
<input type="checkbox"/>	2024	녹색전환지원실	1	11,230	0	0	0	0	임시저장	-

<소속 하위기관을 가진 상위기관일 경우(상위 또는 차상위기관)>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계획 승인/반려] 버튼 클릭
- ② ‘승인구분’란에 제출상태인 소속하위기관의 실적목록 조회(미제출기관 제외)
- ③ 기관명 클릭하여 상세페이지로 이동
 - ※ 하위기관의 계획 미처리 시 계획 합산 및 제출 불가
 - ※ 승인구분이 임시저장 상태일 경우, 승인 및 반려 처리 불가→하위기관에 제출 요청

계획 승인/반려

기관 및 작성자 정보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계획 등록 정보 엑셀다운로드

녹색상품분류			총구매(일반+녹색구매)(A)		녹색구매(B)		녹색 구매비율(B/A)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
합계			1	11,230	0	0	0	0
사무/교육/영상/가전	OA칸막이(파티션)	OA칸막이	0	0	0	0	0	0
원부자재/기타	사료	사료	0	0	0	0	0	0
	목욕상자	목욕상자	0	0	0	0	0	0
	인공어초 및 부자	인공어초 및 부자	0	0	0	0	0	0
	토양개량제	토양개량제	0	0	0	0	0	0
	기타	기타	0	0	0	0	0	0
원부자재/기타	소계 - 5건		0	0	0	0	0	0

반려
목록
승인

- ④ 선택된 소속 하위기관의 기관명 및 작성자 정보 확인
- ⑤ 작성된 구매계획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하단에 [승인] 클릭(원 단위 확인)
- ⑥ 반려사유가 발견되면 [반려] 클릭 후 반려사유를 기재, 하위기관에 반려내용 안내하여 재제출 유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합산 및 제출-상위기관

구매이행계획 제출

1. 계획입력
2. 계획 승인/반려
3. 계획 합산/제출
4. 계획 공표 현황
5. 시군구 계획입력 현황

❏ 최종적으로 구매실적 및 계획을 제출한 기관은 관련 공문 및 공표현황을 “공표현황등록” 메뉴에서 찾아 등록해 주십시오
❏ 2018, 2019, 2020, 2021년도 실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입니다.

계획 제출 목록 합산 및 최종제출 엑셀다운로드

총 4 건

계획연도	기관명	총구매(일반+녹색구매)(A)		녹색구매(B)		녹색 구매비율(B/A)		승인구분	증감 여부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		
202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225	655,977,050	1,072	218,899,650	48.2	33.4	1차제출(최상위...	시유 조회
2024합산	합계(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34	694,499,151	1,175	255,983,751	50.3	36.9	기술원번호	-
2024	기술원	1	1	1	1	100	100	상위기관 승인	-
2024	녹색전환지원실	1	11,230	0	0	0	0	상위기관 승인	-

<소속 하위기관을 가진 상위기관일 경우(상위 또는 차상위기관) 해당 메뉴 사용>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계획합산/제출] 클릭
- ② 최상위기관 '1차제출' 또는 차상위기관 '등록' 상태인지 확인
- ③ 소속하위기관의 구매계획이 모두 '상위기관 승인' 상태인지 확인
- ④ [합산 및 최종제출] 또는 [합산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기관의 구매계획 합산
- ⑤ 반려된 기관이 있거나, 미승인 기관이 있는 경우 합산하기 불가능

합산 및 최종제출

☑ 계획 등록정보 확인 후 하단의 합산 및 최종제출 버튼을 통해 합산등록을 하셔야 합산이 등록됩니다.

계획 등록 정보 액셀다운로드

녹색상품분류			총구매(일반+녹색구매)(A)		녹색구매(B)		녹색 구매비율(B/A)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
합계			2,227	655,988,281	1,073	218,899,651	48.2	33.4
사무/교육/영성/가전	OA간막이(파티션)	OA간막이	25	3,837,200	12	3,583,200	48	93.4
원부자재/기타	사료	사료	0	0	0	0	0	0
	육요상자	육요상자	0	0	0	0	0	0
	인공어초 및 부자	인공어초 및 부자	0	0	0	0	0	0
	토양개량제	토양개량제	1	1	1	1	100	100
	기타	기타	0	0	0	0	0	0
	흙막이판		0	0	0	0	0	0
원부자재/기타	소계 - 6건		1	1	1	1	1...	1...

- ⑥ [합산 및 최종제출] 또는 [합산등록] 버튼 클릭 시 합산된 구매계획 조회 가능
- ⑦ 합산된 구매계획에 이상이 없으면, 하단 [합산 및 최종제출] 또는 [합산등록] 클릭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공표 입력

구매계획

년도
[전체] ▼

본청 공표내역 구매계획 공표

총 6 건

년도	구분	기관	공문번호	공표일	공표방법	홈페이지 URL	작성일
2023	구매계획			2023.11.01	홈페이지 게시	https://www.naver.co...	2023-11-15
2023	구매계획			2023.02.14	홈페이지 게시		2023-02-14
2022	구매계획			2022.03.29	홈페이지 게시		2022-03-29
2021	구매계획			2021.03.19	홈페이지 게시 등		2021-03-19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계획 공표 현황] 클릭
 ※ 소속기관과 타 기관의 연도별 구매계획 공표현황 조회 가능
- ② [구매계획 공표] 클릭

계획공표입력

계획공표입력정보

년도	2023 ▾		
공표일*	<input type="text"/>	공문번호*	<input type="text"/>
공표방법*	<input type="text"/>		
홈페이지 URL	<input type="text"/>		
공문서 및 수범사례 첨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추가 +"/>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삭제"/>		
	<input type="checkbox"/>	파일명	첨부파일크기(Byte)
<input type="button" value="첨부"/> 데이터가 없습니다			
※ 공표파일은 PDF, HWP, JPG, ZIP 형식의 파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input type="button" value="취소"/>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최상위기관의 구매계획이 '기술원 승인' 이후 입력 가능>

- ③ 년도, 공표일 선택 후 공문번호, 공표방법 입력
- ④ '공문서 및 수범사례 첨부'에 홈페이지 공표내용 캡처 또는 공문서, 수범사례 등 첨부
 - ※ 기관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에 승인된 구매계획을 공표할 수 있음
- ⑤ 작성된 내용 확인 후 저장 버튼 클릭

2 녹색제품 구매실적

■ 녹색제품 구매실적 확인 및 제출

녹색구매실적

구매실적 제출
실적 합산 및 환경부 제출

❏ 최상위기관(대전광역시)에 구매실적을 제출합니다. (본청 > 최상위기관, 소속기관 > 최상위기관)

- 최상위기관에 제출할때 품목별로 전년도 구매계획 대비 3% 이상 저조할 경우 미구매사유를, 전년도 구매실적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경우 또는 5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감사유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최상위기관 본청 담당자께서는 환경부제출 메뉴에서 소속기관 실적위합 후 '환경부 제출' 버튼을 눌러주셔야 실적제출이 최종완료됩니다.

구매실적 제출
역셀드온로드 >

분류명	구매실적 총합계(A+B-C+D+E)			조달구매실적(A)			신규실적 추가(B)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비율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인정금액(원)	비율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합계									
OA칸막이									
보관용 가구									
의자									
주방가구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구매실적 제출] 클릭
- ② 구매실적 수기입력 없이, 실적 확인 후 [구매실적 제출] 클릭

■ 미구매 사유 및 증감사유 제출

구매실적(미구매사유등록)

❏ 전년도 구매계획 대비 3% 이상 감소 시 미구매 사유 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 시 최상위기관 제출이 완료됩니다.

녹색제품 미구매 사유

녹색제품 분류	구매계획 금액(원)	구매실적 금액(원)	계획대비 실적비율(%)	선택	미구매 사유	내용
보관용 가구				<input type="checkbox"/>	불완전한 구매 방법	
				<input type="checkbox"/>	품목 및 사양이 다양성 부족	
				<input type="checkbox"/>	인식 및 신뢰도 부족	
				<input type="checkbox"/>	입력 외 미구매 제도인 상충	
				<input type="checkbox"/>	낮은 품질	
			<input type="checkbox"/>	높은 가격		

구매실적(증감사유등록)

전년도 구매실적			당해년도 구매계획			증감비율(%) (B/A)
총구매실적(원)	녹색구매실적(원)(A)	녹색구매 비율(%)	총구매실적(원)	녹색구매실적(원)(B)	녹색구매 비율(%)	
0	0	0				0

당해년도 증감 상위 5개 품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년도 구매실적		당해년도 구매실적	
			총구매실적(원)	녹색구매실적(원)	총구매실적(원)	녹색구매실적(원)

[X] 데이터가 없습니다.

녹색제품 구매불 증가 사유

사유	사유	사유
<input type="checkbox"/> 입찰 공고, 신청서, 구매요구서 등 녹색제품 우선구매 명시를 통해 구매방도	<input type="checkbox"/> 녹색제품 구매관련 자체고제 및 홍보 수거적 실시	<input type="checkbox"/> 기관 경영목표에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의견작성)	<input type="checkbox"/> 녹색제품 구매관련 자체 이행계획 수립	

- ① 품목별 실적이 구매계획 대비 3% 이상 저조한 경우, 미구매 사유 입력
- ② 전년도 구매실적 대비 30% 이상 감소 또는 5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감사유 입력

■ 녹색제품 구매실적 확인 및 제출-최상위기관

녹색구매실적

구매실적 제출
실적 합산 및 환경부 제출

기관총계 및 환경부 제출

조회년도: 2022 기관분명: 하위기관: 🔍 검색

※ 최상위기관 분청 담당자께서는 '기관총계 및 환경부제출' 메뉴에서 소속기관 실적 취합 후 '환경부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실적 제출이 최종완료됩니다.

합계 (기관)	구매실적 총합계(A+B-C+D+E)			조달구매실적(A)			신규실적 추가(B)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비율 (%)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비율 (%)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비율 (%)
조회된 제품 실적합계 (품목별 조회)									

※ 기관명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235 건 엑셀다운로드 >

기관명	하위 기관수	구매실적 제출상태	구매실적 총합계(A+B-C+D+E)			조달구매실적(A)			비율	총-금액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비율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인정금액(원)		
		제출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실적 합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클릭
- ② 소속기관의 구매실적 제출여부 확인
 - ※ 소속기관 분청에서 실적이 최종 제출되면 '구매실적 제출상태'에 '제출' 표시됨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클릭 시 소속기관 전체(미제출기관 포함) 합산 실적이 제출 처리됨(기후 에너지환경부 승인절차 없음)

녹색구매실적

구매실적 제출
실적 합산 및 환경부 제출

기관총계 및 환경부 제출

조회년도: 2023 기관분명: 하위기관: 🔍 검색

※ 최상위기관 분청 담당자께서는 '기관총계 및 환경부제출' 메뉴에서 소속기관 실적 취합 후 '환경부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실적 제출이 최종완료됩니다.

합계 (기관)	구매실적 총합계(A+B-C+D+E)			조달구매실적(A)			신규실적 추가(B)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비율 (%)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비율 (%)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비율 (%)
조회된 제품 실적합계 (품목별 조회)									

※ 기관명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235 건 엑셀다운로드 >

기관명	하위 기관수	구매실적 제출상태	구매실적 총합계(A+B-C+D+E)			조달구매실적(A)			비율	총-금액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비율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인정금액(원)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실적 합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클릭
- ② [조회년도] 클릭하여 원하는 연도 선택 후 [검색] 클릭
- ③ 소속기관 및 분청의 조회년도 구매실적 및 제출상태 확인 가능

4 통계정보

1. 총괄구매실적

구매실적 현황

총괄구매실적 조달구매실적 연계시스템 구매실적 기관업무평가 결과

분청및소속기관구매실적 시/군/구별 구매실적

2018, 2019, 2020년도 실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입니다.
 기관별 품목별 실적은 2022년 이후 실적부터 제공됩니다. 관련부서는 02-2284-106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년도: 2024 하위기관: 조회일: 01 ~ 12

검색

합계 (235개 기관)	구매실적 총합계(A+B+C+D+E)			조달구매실적(A)				신규실적 추가(B)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비율 (%)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인정금액(원)	비율 (%)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조회된 목록 실적합계(품목별 조회)									

※ 기관명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235 건 목록다로보기 >

기관명	하위 기관수	구매실적 총합계(A+B+C+D+E)			조달구매실적(A)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비율 (%)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인정금액(원)	비율 (%)
광역시	기동단	0	0	0	0	0	0	0

- ①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구매 정보] → [총괄구매실적] 클릭
 - ② [조회된 목록 실적합계] 클릭 시 품목별 조회 가능
 - ③ 소속하위기관 실적 조회 가능
- ※ 본청 및 하위기관의 기관별 실적 최상단에 기재된 실적은, 하위기관을 제외한 최상위기관(본청) 실적에 해당

구매실적 현황

총괄구매실적 조달구매실적 연계시스템 구매실적 기관업무평가 결과

분청및소속기관구매실적 시/군/구별 구매실적

(A) 조달된 연계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내역
 (B) 실적수령 - 신규실적 추가요청 내역의 승인된 내역
 (C) 실적수령 - 기존실적 예외요청 내역의 승인된 내역
 (D) 녹색구매 연계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내역
 2018, 2019, 2020년도 실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입니다.

조회년도: 2024 기관분청: [광역시] 조회일: 01 ~ 12

검색

합계 (6개 기관)	구매실적 총합계(A+F+B-C+D+E)			조달구매실적(A)				신규실적 추가(B)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비율 (%)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인정금액(원)(F)	비율 (%)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조회된 목록 실적합계(품목별 조회)									

총 6 건 목록다로보기 >

기관명	하위 기관수	구매실적 총합계(A+F+B-C+D+E)			조달구매실적(A)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비율 (%)	총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금액(원)	녹색구매 인정금액(원) (F)	비율 (%)
광역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① [시/군/구별 구매실적] 탭 이동
- ② [조회된 목록 실적합계] 클릭 시 품목별 조회 가능
- ③ 구매금액 클릭 시 소속하위기관 실적 조회 가능하며, 기관명 클릭 시 상세 실적 조회 가능

2. 조달구매실적

■ 구매현황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조달구매실적] 클릭
- ② [하위기관 포함] 클릭 시 하위기관 조달실적을 포함한 현황 조회 가능
※ 미 체크 시 기본 조회기관만 검색됨
- ③ 조회된 내용의 금액 클릭 시 상세내역 확인 가능

■ 상세내역

- ① [상세내역] 탭 클릭
- ② 원하는 조건에 따라 조달실적 검색 가능
- ③ [본청 및 하위기관] →검색 후 [기관추가] 하여 하위기관 조달실적을 포함한 현황 조회 가능
※ 미 체크 시 기본 조회기관만 검색됨
- ④ 조회된 조달상세내역 확인가능
- ③ 구매금액 클릭 시 소속하위기관 실적 조회 가능하며, 기관명 클릭 시 상세 실적 조회 가능

■ 조달실적 이관

구매실적 현황

총괄구매실적 | **조달구매실적** | 연계시스템 구매실적 | 기관업무평가 결과

구매현황
상세내역
실적이관
이관내역

실적이관 대상 목록

기관명	품목명	납품요구번호	공급일자	G2R분류번호	G2R시행번호	G2R종명	규격
이스탈트콘크리트				3011597	2201364	이스탈트콘크리트	이스탈트콘크리트

2018, 2019, 2020년도 실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입니다.

공급일자* 하위*

2024.05.15 ~ 2024.11.15

G2R분류번호

실적이관 대상기관 선택

납품요구번호

기관대상 총무과 **기타***

제품규격

원소 **실적이관**

Q 검색

선택실적이관 | **액셀다운로드**

선택	기관명	구매분류명	계약명	규격	인증구분	납품요구번호	금
<input type="checkbox"/>		아스콘		..	아스탈트콘크리트,1	일반	20.
<input type="checkbox"/>		아스콘		..	아스탈트콘크리트,1	일반	20.

- ① [실적이관] 탭 클릭
 - ② 이관대상 실적 [검색]→선택 후[선택실적이관]
 - ③ [기관검색]→이관대상 기관 선택 후[실적이관]
- ※ 조달구매실적에 대한 부서별 실적 집계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적이관 가능

■ 최근3년 구매실적

구매현황 | 상세내역 | 실적이관 | 이관내역 | **최근3년 구매실적**

조회 월이 기준이 되어 최근 3년동안의 1월부터 조회월까지의 누적 실적을 조회합니다
(예)6월 선택 : 각 년도별로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실적 조회

조회월

12월

조회기관

Q 검색

액셀다운로드

기관명	2022			2023			2024		
	총구매금액	녹색구매금액	비율	총구매금액	녹색구매금액	비율	총구매금액	녹색구매금액	비율
합계									

- ① [최근3년 구매실적] 탭 클릭
- ② 조회 월 선택 후 검색
 - ※ 조회 월이 기준이 되어 1월부터 조회 월까지의 누적 실적 조회
- ③ 기준년도부터 최근 3년간 기관별 조달구매 실적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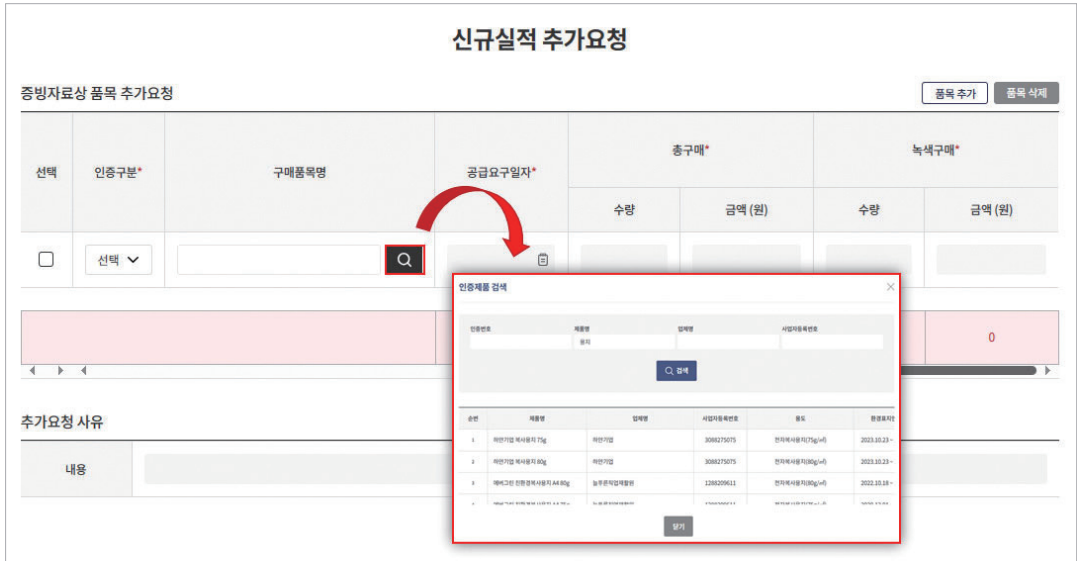
5 실적수정

1. 신규실적 추가요청

■ 신규실적 추가요청 신청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신규실적 추가요청] 클릭
- ② 신규실적 추가요청 현황 조회(실적년도/요청일자/분류번호/인증구분/승인구분/식별번호/품목명)에 따라 조회 가능)
- ③ '신규실적 추가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요청 화면으로 이동
 - ※ 상세한 입력 방법, 필요 증빙 등의 사항은 에코스퀘어 [알림센터]→[공지사항]→[친환경녹색진흥]→'녹색제품 구매 실적 수정요청 신청 방법' 게시글의 첨부 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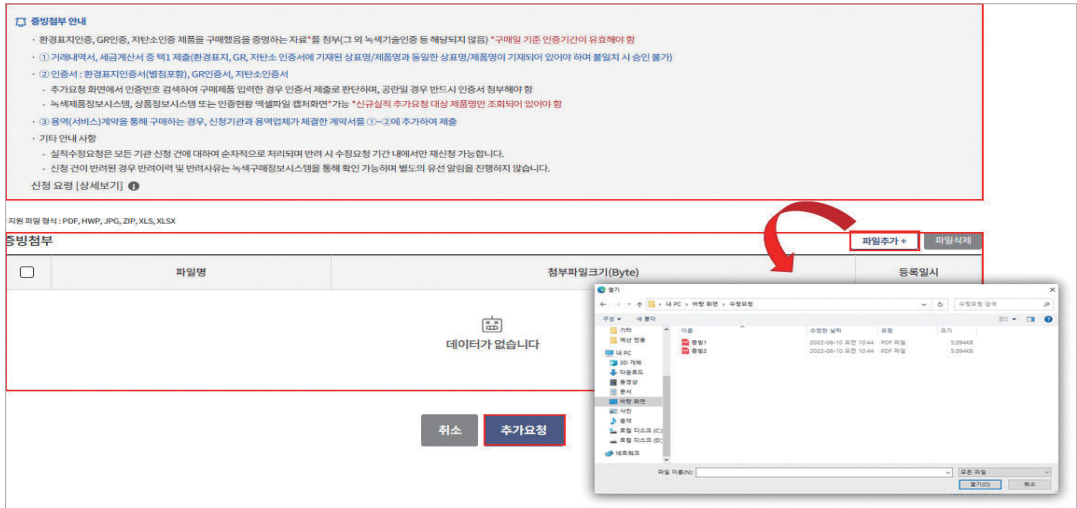
- ④ 증빙서류 상 품목 개수만큼 [품목추가] 클릭
 - ※ 증빙서류 한 건당 한 건 신청
- ⑤ 소분류 항목 입력란 옆의 [돋보기] 클릭 후 신청대상 실적의 품목분류 선택 (선택 시 자동으로 대분류, 중분류 입력됨)
- ⑥ 인증구분 선택
 - ※ 복수인증 선택 시 각각 인증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必



- ⑦ 구매품목명 항목 입력란 옆의 [돋보기] 클릭
- ⑧ 신청 대상 확인하여 인증번호, 제품명 등 입력 후 [검색] 클릭
- ⑨ 검색 목록 중 신청 대상 제품명, 업체명 등 확인하여 클릭



- ⑩ 증빙서류 상 공급일자 입력
- ⑪ 수량 및 구매금액 입력
 - ※ 제품별 수량과 금액 입력
 - ※ 입력 대상: 증빙에 기재된 녹색제품이 존재하는 품목의 녹색제품
- ⑫ 추가요청 사유 작성(선택사항)



- ⑬ [파일선택] 클릭하여 증빙서류 등록
 ※ 증빙첨부 안내 확인하여 필요한 증빙자료 확인
- ⑭ [추가요청] 클릭

■ 신규실적 추가요청 수정 및 철회

신규실적 추가요청 현황

신청	승인	반려	추가 구매 승인합계	추가 녹색구매 승인합계
1 건	99 건	51 건		

요청번호	실적연도	처리일자	신청건수	기관명	품목	분류번호
20222679	2022					
2022160	2022					
2022159	2022					
2022158	2022					
2022157	2022					

20222679 상세내용:

증빙첨부 안내

- 환경표지인증, GR인증, 저탄소인증 제품을 구매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그 외 녹색기술인증 등 해당되지 않음) *구매일 기준 인증기간이 유효해야 함
- ①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중 택1 제출(환경표지, GR, 저탄소 인증서에 기재된 상품명/제품명 및 동일한 상품명/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불일치 시 승인 불가)
- ② 인증서: 환경표지인증서(별첨파일), GR인증서, 저탄소인증서
 - 추가요청 화면에서 인증번호 검색하여 구매제품 입력한 경우 인증서 제출로 판단하며, 공관일 경우 반드시 인증서 첨부해야 함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상품정보시스템 또는 인증현황 '예선택필' '예선택의무' 가능 *신규실적 추가요청 대상 제품명만 조회되어 있어야 함
- ③ 용역(서비스)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신청기관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계약서(용 ①~②에 추가하여 제출)
- 기타 안내 사항
 - 실적수정요청은 모든 기관 신청 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되며 반려 시 수정요청 기간 내에서만 재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건이 반려된 경우 반려이유 및 반려사유는 녹색구매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별도의 유선 알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청 요청 [상세보기]

지원파일 형식: PDF, HWP, JPG, ZIP, XLS, XLSX

증빙첨부

파일명	첨부파일크기(Byte)	등록일자
...복합양식제출_45	114,176	2023-11-29 14:36

취소 | **철회요청** | 추가요청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신규실적 추가요청]→[검색]
 ※ 승인요청 수정 및 철회는 '승인요청' 상태일 때 가능하며, 추가요청 현황에서 요청번호 클릭
- ② 수정 시: 추가요청 상세내용 수정 후 하단에 [추가요청] 클릭
- ③ 철회 시: 추가요청 상세내용 확인 후 하단에 [철회요청] 클릭
 ※ 추가요청 반려 시 반려 사유 확인 후 요청번호 클릭하여 수정 및 [재신청] 클릭

2. 녹색구매 인정요청

■ 녹색구매 인정요청 신청하기

구매실적 수정요청

인정요청 대상실적 인정요청 현황

조달청 구매실적 중 일반제품 구매 건을 녹색구매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 조달청을 통해 구매된 실적 중 일반제품 구매 건으로 집계된 실적을 녹색구매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메뉴에서 신청
 - 신청한 건이 승인되면 해당 금액만큼 녹색제품 구매실적으로 인정되며, 총괄구매실적에서 제외 가능
 - 2018, 2019, 2020년도 실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입니다.

공급년도 2024	분류번호 G2E품명	식별번호	
납품요구번호	제품구분	제품구분	제품구분
공급금액	하위기관	하위기관	하위기관

* 인정요청 차/반기별 건에 대한 재신청은 인정요청 현황 화면에서 요청번호 클릭 후 상세 화면에서 재신청 가능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관명	구매분류명	인증구분	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공급일자	분류번호	식별번호	금액(천원)	녹색구매 인정요청	액셀다운로드
<input type="checkbox"/>			일반		0	2024.06.28	30129998	22683157			
<input type="checkbox"/>			일반		1	2024.06.28	30129998	23219503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녹색구매 인정요청] 클릭
- ② 녹색구매 인정요청 대상 실적 조회(분류번호/식별번호/납품요구번호 등에 따라 조회 가능)
- ③ 신청하고자 하는 실적 선택(최대 15개까지 선택 가능)
- ④ [녹색구매 인정요청]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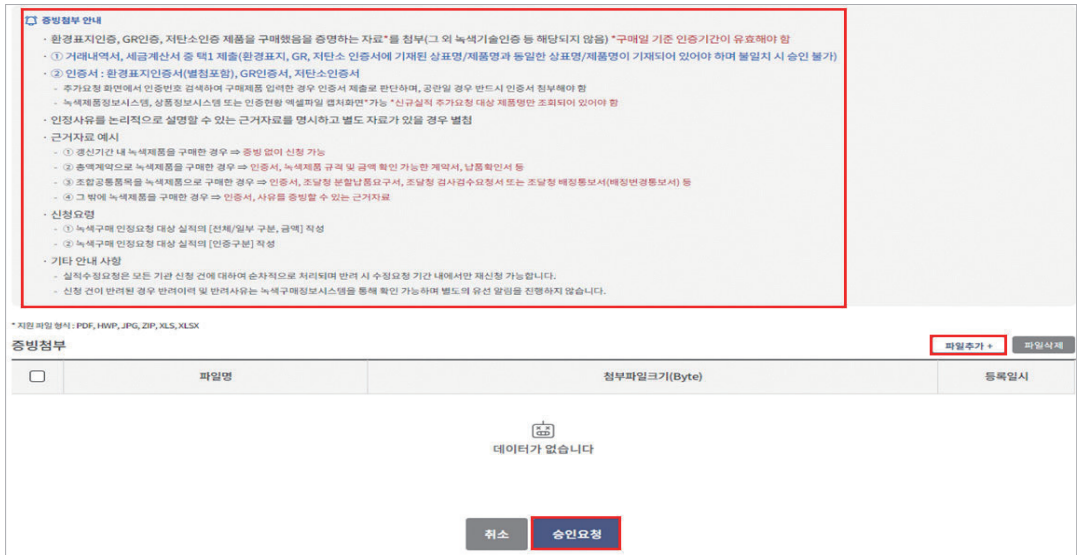
녹색구매 인정요청

기관명	품목	인증구분*	납품요구번호	공급일자	분류번호	식별번호	품명	입체명	계약구분
한국환경산업기...	착상(약자)	환경표지 [선택] 환경표지 GR 저탄소 환경표지+GR 환경표지+저탄소 GR+저탄소 환경표지+GR+저탄소	R25TB00548460	2025.05.08	56122...	22875521	실형태	공동산업주...	제3자단가...

녹색구매 인정요청

규격	녹색구매 인정사유*	일부구분*	인정요청 수량	인정요청 금액(원)	전체 수량	전체 금액(원)
실형태, 광동산업, ...	[선택] 경산기간 내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 중역계약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 그 밖에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 조달청 통통목음 녹색제품으로 구매한 경우 그 외(기타사유는 직접기재 바랍니다.)	전체	1	1,053,000	1	1,053,000
	소계		1	1,053,000	1	1,053,000
			1	1,053,000	1	1,053,000

- ⑤ 녹색구매 인정요청 대상 실적의 인증구분 선택
 - ※ 복수인증 선택 시 각각 인증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必
- ⑥ 녹색구매 인정요청 사유 선택(추가 작성 필요시 하단에 작성)
- ⑦ 선택된 실적의 전체/일부 구분 및 금액 입력
 - ※ 전체 계약 금액 중 일부 금액에 한해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 일부 선택 후 해당 금액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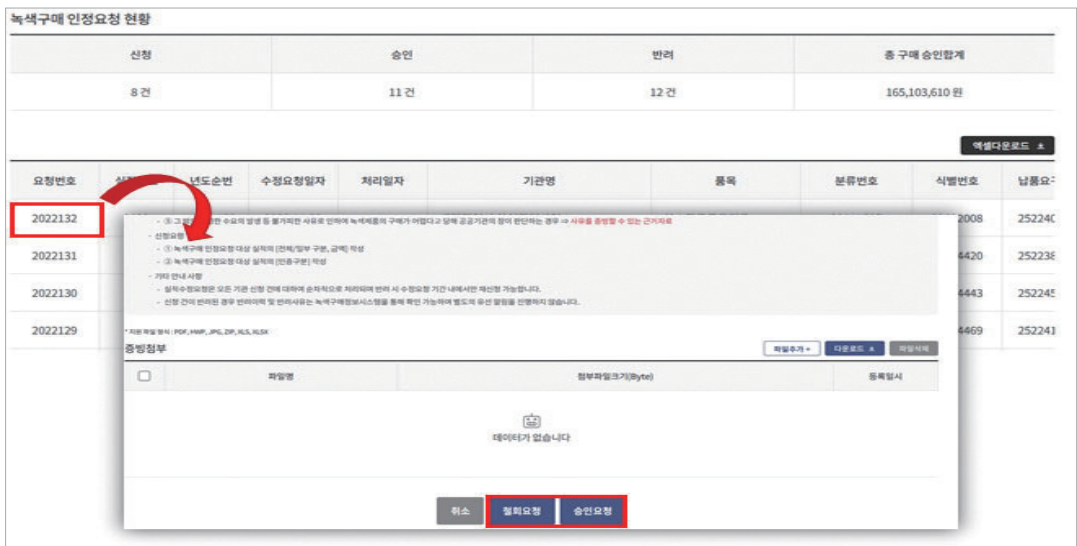


⑧ [파일추가] 클릭하여 작성한 증빙서류 등록

※ 증빙첨부 안내 확인하여 필요한 증빙자료 확인

⑨ [승인요청] 클릭

■ 녹색구매 인정요청 수정 및 철회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녹색구매 인정요청]→[인정요청 현황]→[검색]

※ 승인요청 수정 및 철회는 '승인요청' 상태일 때 가능하며, 인정요청 현황에서 요청번호 클릭

② 수정 시: 승인요청 상세내용 수정 후 하단에 [승인요청] 클릭

③ 철회 시: 인정요청 상세내용 확인 후 하단에 [철회요청] 클릭

3. 기존실적 예의요청

■ 기존실적 예의요청 신청하기

구매실적 수정요청

예의요청 대상실적 예의요청 현황

조달청 구매실적 중 일반제품 구매 건의 실적을 예외하기 위한 절차
 ·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실적 중 일반제품 구매 건의 실적을 예외하기 위해, 해당예뉴에서 신청
 · 신청한 건이 승인되면 해당 금액만큼 제외되며, 총괄구매실적에서 조회 가능
 · 2018, 2019, 2020년도 실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입니다.

공급년도 2024	분류번호	식별번호
납품요구번호	G2B용역	제품규격
공급가액	하위기관	

※ 예의요청 중 반려된 건에 대한 재신청은 예의요청 현황 화면에서 요청번호 클릭 후 상세 화면에서 재신청 가능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관명	구매분류명	인증구분	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공급일자	분류번호	식별번호	품명
<input type="checkbox"/>		패인트	일반		0	2024.06.28	30129997	23355489	도장염바닥재
<input type="checkbox"/>		패인트	일반		0	2024.06.28	30129998	22683157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기존실적 예의요청] 클릭
- ② 기존실적 예의요청 대상 실적 조회(분류번호/식별번호/납품요구번호 등에 따라 조회 가능)
- ③ 신청하고자 하는 실적 선택(최대 15개까지 선택 가능)
- ④ [기존실적 예의요청]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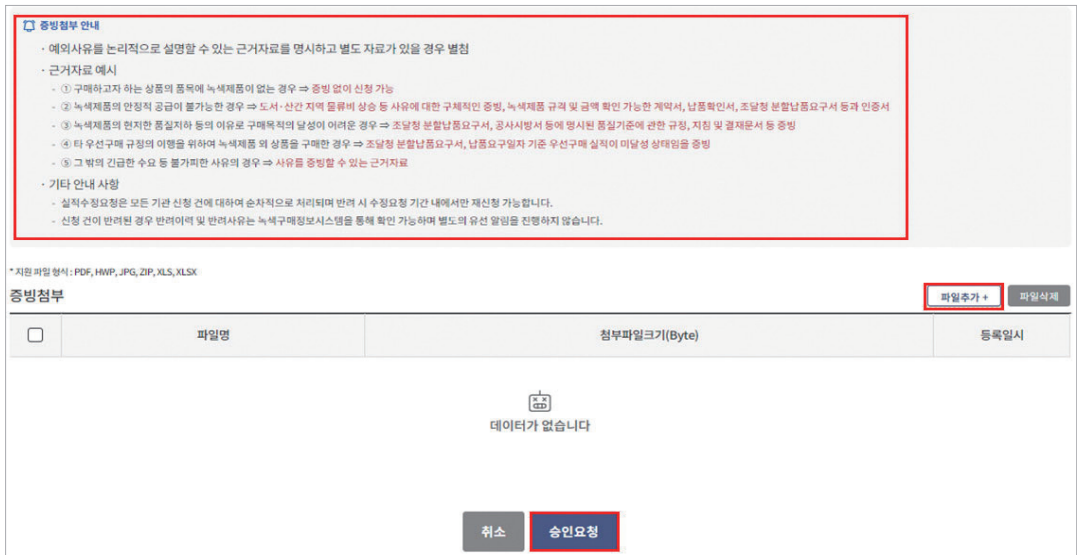
기존실적 예의요청

규격	예의사유*	일부구분*	인정요청수량	인정요청 금액(원)	전체 수량	전체 금액(원)
레이콘, 조합공동...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input style="border: 2px solid red;" type="button" value="[선택]"/>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 [선택]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녹색제품의 인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타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 상품을 구매한 경우 그 밖의 긴급한 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그 외(기타사유는 직접기재 바랍니다.) </div>	<input style="border: 1px solid gray;" type="button" value="[선택]"/>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소계				

예의요청 사유

내용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	--

- ⑤ 기존실적 예의요청 사유 선택
- ⑥ 선택된 실적의 전체/일부 구분 및 금액 입력(추가 작성 필요시 하단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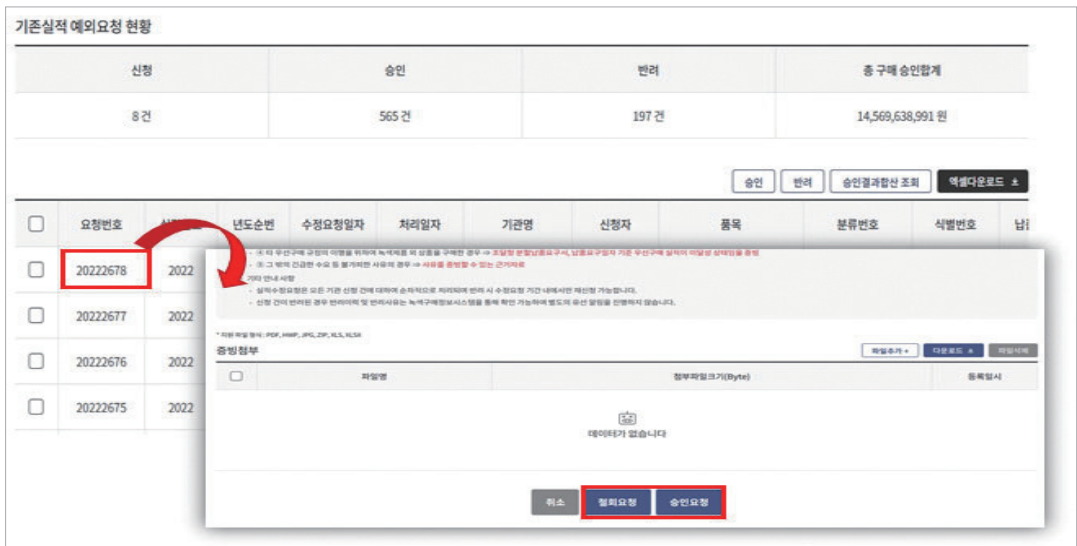


⑦ [파일추가] 클릭하여 작성한 증빙서류 등록

※ 증빙첨부 안내 확인하여 필요한 증빙자료 확인

⑧ [승인요청] 클릭

■ 기존실적 예의요청 수정 및 철회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녹색구매 예의요청]→[예의요청 현황]→[검색]

※ 승인요청 수정 및 철회는 '승인요청' 상태일 때 가능하며, 예의요청 현황에서 요청번호 클릭

② 수정 시: 예의요청 상세내용 수정 후 하단에 [승인요청] 클릭

③ 철회 시: 예의요청 상세내용 확인 후 하단에 [철회요청] 클릭

구매실적 수정요청

신규실적 추가요청 녹색구매 인정요청 기본실적 예외요청

예외요청 대상실적 예외요청 현황

2018, 2019, 2020년도 실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입니다.

실적년도
2024

납품요구번호

승인구분
[전체]

분류번호

품목명

수정요청일자

식별번호

제품규격

🔍 검색

기본실적 예외요청 현황

기관 및 작성자 정보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수정요청 품목	제품명: 2024년 1월	구분: 1000	구분: 1000	구분: 1000
요청번호	6242010	6242010	6242010	6242010
요청일자	2024.01.25	2024.01.25	2024.01.25	2024.01.25
요청내역	내역: 2024.01.25 ~ 2024.01.25			

총 구매 승인합계

0 원

승인
반려
승인결과합산 조회
엑셀다운로드

공급일자	분류번호	식별번호
2024.01.25	30111505	22618530
2024.01.31	56101530	24654055

※ 기존실적 예외요청에 대한 자가관리 도입되어, 신청 기관 담당자가 직접 승인 및 반려 처리까지 완료하여야 함 (2023년 지방자치단체 대상, 2024년 전체기관 대상 도입)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녹색구매 예외요청]→[예외요청 현황]→[검색]
- ② 요청번호 클릭 후 입력 사항 및 증빙자료 검토
- ③ 현황 하단 [목록] 클릭→검토건 선택 후 승인 및 반려 처리

6 구매교육

■ 교육신청

환경산업지원 환경기술인증 친환경녹색진흥 환경인력교육 알림센터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구매 정보 > 녹색제품 구매교육 > 교육 신청

녹색구매 정보교육

교육 신청 관선행 신청 교육/관선행 신청 내역

교육장소별 교육대상: 국가기관 및 지자체(지방, 교육), 공사·공단, 기타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은 각 관역별 지자체와 교육청 등 모든 기관이 동일한 날짜에 시행합니다.
 교육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나,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가 마감된 경우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좌석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선행신청 현황

선택	교육회차	교육명 (장소)	교육일시	정원
○	1	강리테스트 (강리테스트 실)	2023.11.22 13:00 ~ 2023.11.22 17:00	-

교육신청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교육 신청] 클릭
- ② 교육명, 교육일시, 교육장소를 확인 후 선택, [교육신청] 클릭

교육신청

신청일정 2023.11.22 13:00 ~ 2023.11.22 17:00 강리테스트 (강리테스트 실)

소속기관명*	<input type="text" value="광역시"/>	소속부서*	<input type="text"/>
직위*	<input type="text"/>	신청자명*	지자체1
이메일*	<input type="text" value="test111@test.com"/>		
관심분야	<input type="checkbox"/> 녹색구매정보시스템 이용방법 <input type="checkbox"/> 수정요청 신청방법 <input type="checkbox"/> 지표설명 <input type="checkbox"/> 녹색제품 확인방법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락처(휴대폰) 항목에 반드시 휴대폰 번호를 넣으셔야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번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어 교육신청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교육일정 **등록**

- ③ 소속기관명, 부서 등 신청자 정보 입력
- ④ 관심분야 선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⑤ [휴대폰인증] 클릭하여 본인인증
- ⑥ [등록] 클릭

■ 교육/상담회 신청확인 및 교육이수증 발급

녹색제품 구매교육

교육 신청
상담회 신청
교육/상담회 신청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녹색제품정보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녹색제품정보시스템 교육 및 상담회 신청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 및 상담회관련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휴대폰 인증

신청 현황 조회

신청구분	신청명	회차	일시	소속기관명	신청자명	이메일	수료여부
교육	2023년도 2차 공공기관 녹색구매살...	1	2023.10.26 10:00~2023.10.26 11: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료

- ① [친환경녹색진흥]→[녹색구매 정보]→[교육/상담회 신청 내역] 클릭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③ [휴대폰 인증]
- ④ 신청내역 확인 후 발급희망건의 신청명 클릭

교육명	녹색제품 구매정책 전국 순회교육 - test
신청일정	2023-11-29 ~ 2023-11-29
소속부서	녹색전환지원실
신청자명	지자체1
이메일	test111@test.com
관심분야	녹색구매정보시스템 이용방법
교육수료여부	수료

설문참여를 완료 하시고 나면, 교육이수증 발급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설문참여 부터 참여 부탁드립니다.

녹색제품 구매정책 전국 순회교육 의식조사

기관명	대안업체사	부서명	녹색전환지원실
직책	연구원	이름	지자체1

녹색제품 구매 관련 설문조사

01 귀하는 녹색제품 입찰을 담당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6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이상
 2년 이상

02 녹색제품에 대한 성의 및 의무구매제도에 대해 교육 참석 전 알고 있었습니까?

물론구매담당자
 잘 알고 있었다
 지료관리담당자

설문참여

설문참여
교육이수증 발급
목록
취소

- ⑤ 수료한 교육일 경우, [설문참여]
 - ※ 신청된 교육 취소 희망 시 [취소]
- ⑥ 팝업창에서 설문조사 진행 후 팝업창 하단의 [설문참여] 클릭

교육신청 상세

교육명	녹색제품 구매정책 전국 순회교육 - test		
신청일정	2023-11-29 ~ 2023-11-29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녹색전원지원실	직위	
신청자명	지자체1	연락처	
이메일	test111@test.com		
관심분야	녹색구매정보시스템 이용방법		
교육수료여부	수료	수료확인일자	

설문참여를 완료 하시고 나면, 교육이수증 발급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꼭! 설문참여 부터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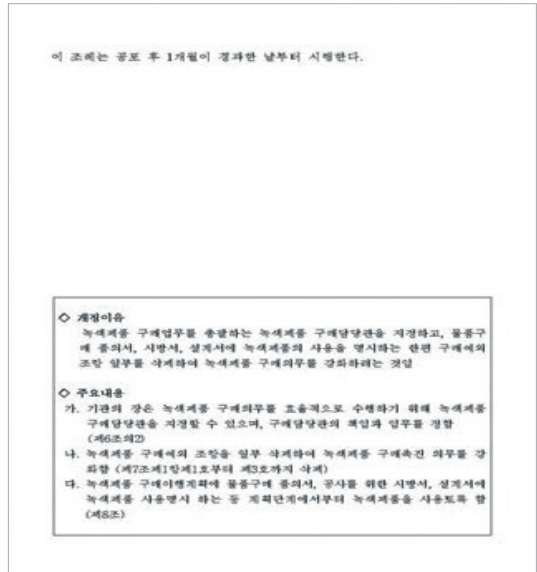
설문참여
교육이수증 발급
목록

- ⑦ [교육이수증 발급] 클릭
- ⑧ 이수증 내역 확인 후 출력

참고사항 7 지자체 조례, 구매지침, 계약규정 등 내부규정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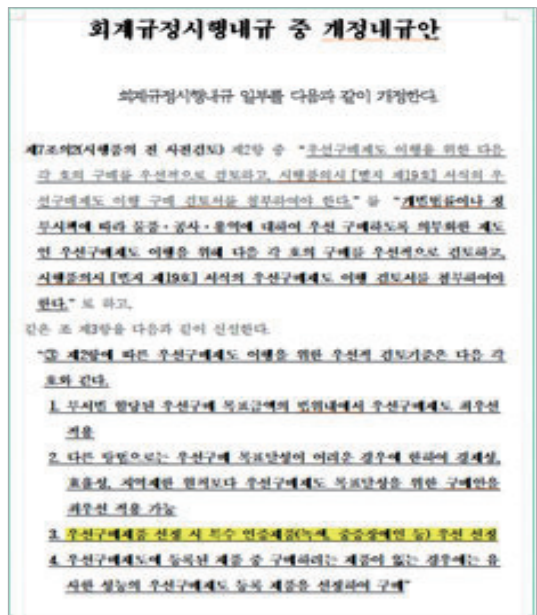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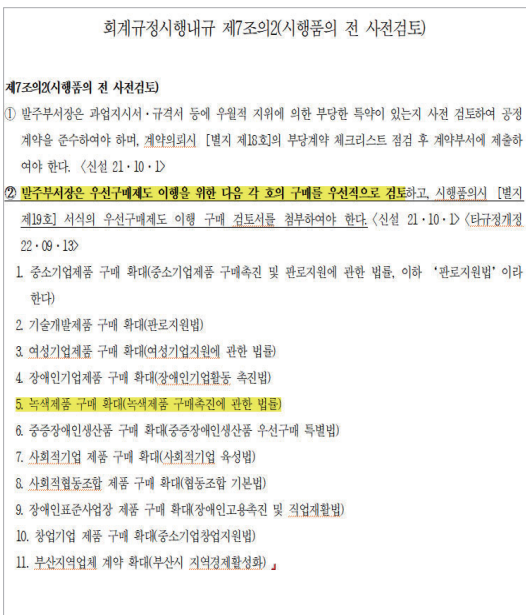
OO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녹색제품 구매예외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녹색구매 의무 강화



회계규정시행내규 신설 및 개정(OO공단)

-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 우선 검토 조항 및 중복인증 우선 구매 조항 신설



■ 기관 주요 구매품목의 녹색제품 구매비율 확대

- 기관 주요 구매 품목(전력기자재) 구매 시 발주량의 일정비율을 녹색제품에 배정(○○공사)

▶ (배정기준) 지역제한경쟁을 준용하되, 5~10%p 확대배정 및 점진적 확대 예정

<As-Is>	기준 없음 ※ 중기특별지원지역 제한경쟁 : 10~20%	>>>	<To-Be>	발주 총 물량의 15~30%
---------	--	-----	---------	------------------------

○ 배정물량 확대계획 : 친환경 전력기자재 조달 로드맵 목표에 따라 매년 상향

연도	'23	'24	'25	'26	'27	'28	'29	'30
배정비율	15~30%	15~33%	15~37%	15~39%	15~42%	15~46%	15~48%	15~50%

➔ 향후 정부인증 제도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 환류 운영 예정

- 부서 공통 수요가 있는 제품(화장실용 화장지 등)의 녹색제품 통합구매 추진(○○공단)
- 전체 부서 수요조사 후 통합구매 발주로 조달청 소품물 녹색제품 대상 MAS 2단계경쟁 계약 추진

○○공단 회계규정시행내규 중 통합구매 규정(일부발체)

※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발체

제 78조(통합구매) ① 물품의 구매·설치 등 각종 계약절차의 시행 시 통합구매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합구매 발주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 및 효율적 통합구매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재무부서의 장에게 통합구매 물품 수요조사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발주품목은 전자입찰(전자공개수의계약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 등에 따라 (중중) 장애인 생산 품목 및 친환경 제품 등의 통합물품은 입찰을 통하지 않고 조달구매(제3차 단가계약) 또는 일반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복사·인쇄 단가계약 시 녹색제품 용지를 사용하도록 사업수행지침 작성(○○기관)
-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수 복사·인쇄 구매실적을 계약 1건으로 실적 증빙 가능

○○공단 회계규정시행내규 중 통합구매 규정(일부발체)

<p>II 사업수행지침</p> <p>1. 사업수행지침</p> <p>○ 복사(출력)업체는 복사(출력)물 계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기일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안전원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야 함</p> <p>○ 국토안전원에서 요청하는 복사(출력) 조건에 따라 완성도 높게 기획·디자인 편집이 이루어져야 하고, 편집 및 오탈자 교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p> <p>○ 복사(출력)업체는 복사(출력) 최종 결과물에 대해 국토안전원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작업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p> <p>○ 복사(출력)업체는 복사(출력)물 내용에 있어서 갱신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 국토안전원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함</p> <p>○ 본 사업으로 완료된 결과물에 대하여 당초 등록조건 및 평가기준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복사(출력)업체의 부담으로 소정의 기한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함</p>	<p>○ 복사(출력)용지는 국산지 및 친환경 용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p> <p>○ 납품 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장·운송하여야 하며, 납품 완료 이전의 파손 발생 시 복사(출력)업체가 책임을 지야 함</p> <p>○ 기한을 넘기거나, 과업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품질의 저하를 초래한 경우 국토안전원에서 요구하는 시정방안 제출 요구, 납품 거부, 지체상금 부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의 조치에 성실히 따라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안전원의 사전 양해를 얻거나 국토안전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p> <p>○ 복사(출력)물의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은 복사(출력)업체에 있음</p>
--	---

■ 환경 분야 녹색제품 구매 평가 지표 마련 및 평가

- 기초지자체에 대해 분청 차원의 환경 분야 업무평가가 지표 마련 및 평가 실시 후 포상 실시(○○시)
- 실적이 우수한 우수기관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상사업비) 및 유공자 기관 표창 수여

기초지자체 환경보전업무 역량 강화 도모

2022년도 환경보전분야 구군 평가 계획

요 약

□ **평가개요**

- 평가대상: 2022년도 환경보전분야 업무 전액(환경정책, 기후대기, 수질)
- 평가분야: 19개 분야 39개 항목
- 평가기간: 2022. 1. 1. ~ 12. 31.
- 평가방법: 업무별 항목(소관팀 평가), 공통분야(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 우수기관: 2관상(최우수 1, 우수 2 장려 4) 및 상사업비 지원(예산편안)
- 유공자 표창: 7명 표창(우수기관 업무유공 공무한)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환경보전업무 발전 도모

구분/분야	평가분야	평가 지표 및 배점	평가 방법	당첨요건	
환경보전(총 100점)	환경정책(총 15점)	1-1 100% 추진 1-2 100% 추진	1. 2022년 환경정책 추진률 / 2021년 환경정책 추진률 * 100% 2. 2022년 환경정책 추진률 / 2021년 환경정책 추진률 * 100% 3. 2022년 환경정책 추진률 / 2021년 환경정책 추진률 * 100%	1. 100% 달성 시 15점, 미달 시 0점	100% 달성 시 15점, 미달 시 0점
	환경정책(총 15점)	2-1 100% 추진 2-2 100% 추진	1. 2022년 환경정책 추진률 / 2021년 환경정책 추진률 * 100% 2. 2022년 환경정책 추진률 / 2021년 환경정책 추진률 * 100%	1. 100% 달성 시 15점, 미달 시 0점	100% 달성 시 15점, 미달 시 0점
환경보전(총 100점)	환경정책(총 15점)	3-1 100% 추진 3-2 100% 추진	1. 2022년 환경정책 추진률 / 2021년 환경정책 추진률 * 100% 2. 2022년 환경정책 추진률 / 2021년 환경정책 추진률 * 100%	1. 100% 달성 시 15점, 미달 시 0점	100% 달성 시 15점, 미달 시 0점
	환경정책(총 15점)	4-1 100% 추진 4-2 100% 추진	1. 2022년 환경정책 추진률 / 2021년 환경정책 추진률 * 100% 2. 2022년 환경정책 추진률 / 2021년 환경정책 추진률 * 100%	1. 100% 달성 시 15점, 미달 시 0점	100% 달성 시 15점, 미달 시 0점

- 지자체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표 활용(○○시)
- 전년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증가율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여 ○○시 내 지자체 출연기관 평가

지표명		환경경영								
대분류	사회적 책임	가중치	0.50점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평가방법	혼합평가							
지표정의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ESG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관에서 추진 중인 ESG 경영 이행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1 에너지 절감노력(정성평가, 0.15점) * 평가주제: 기후환경정책과	-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감축계획 수립 및 성과, 에너지 감축 우수사례 발굴 * 에너지 절감노력으로 실제 에너지절감량 제시 경우 우대								
	①-2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정량평가, 0.25점) * 평가주제: 기후환경정책과	- 전년 대비 평가기간 녹색제품 구매액 증가율 평가 * 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녹색구매정보시스템 입력 실적에 한함								
	①-3 제로웨이스트 노력(정성평가, 0.10점) * 평가주제: 기후환경정책과	- 폐기물, 일회용품 감축 계획 수립 및 성과 - 폐기물 감축 우수사례 발굴								
세부평가방법	①-1 에너지 절감노력, ①-3 제로웨이스트 노력 : 정성평가(9등급 절대평가)									
	①-2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 정량평가(단계별평가)									
구분		A+	A0	B+	B0	C0	D+	D0	E+	E0
점수		100.0	87.5	75.0	62.5	50.0	37.5	25.0	12.5	0.0
평가기준		5% 이상	5% 미만~4% 이상	4% 미만~3% 이상	3% 미만~2% 이상	2% 미만				
비점		0.25점	0.23점	0.18점	0.15점	0.13점				

■ 구매금액이 큰 건설자재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고

- 발전소 건설 시 사용되는 레미콘(녹색제품) 생산기업의 녹색제품 인증 취득을 위한 수수료 지원 및 구매(○○기관)
- 건설 현장 인근 업체 수요 조사 및 저탄소제품 인증 수수료 지원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취득한 저탄소제품 인증서

저탄소인증(환경성적표지) 취득을 위한 인증신청수수료 산정내역

■ 기관 내 녹색제품 홍보 및 자체 교육을 통한 내부 인식 제고

- ○○시 캐릭터와 녹색제품 인증마크를 결합하여 홍보 이미지 제작 및 전직원 대상 자체 역량강화 교육 추진(서울특별시)

○○시 해치캐릭터와 녹색제품 인증마크를 연계한 홍보이미지

녹색제품 의무구매 교육 자체 실시

부서 번호	기후환경본부 000	시/도	서울특별시
공제 번호	2023. 5. 15	교육인	최준근 부시장
공제 번호	부본000(15)	교육인	기후환경부국장
공제 번호		교육인	담당


**2023년
녹색제품 의무구매 교육 실시 결과**

2023. 5. 1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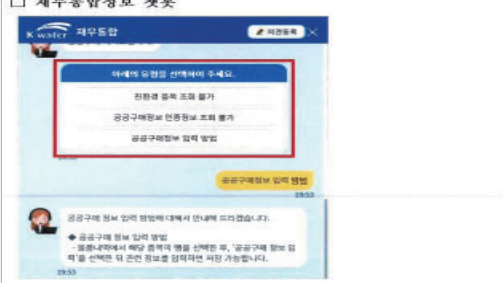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챗봇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업무 이해도 제고 및 구매제품 발굴 공모전 운영을 통해 녹색 제품 인지도 제고


○○공사



제무통합정보 챗봇



○○○○○○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우선구매제품 발굴 공모전 심사결과 보고(정정)

1. 공문근거
가. 운영지원부-5125(2023.4.17.) 2023년 우선구매제품 발굴 공모전 시행 계획보고
나. 운영지원부-8571(2023.5.31.) 2023년 우선구매제품 발굴 공모전 심사 계획보고

1. 추진목적: 정부관정정책에 따른 구매방식 대한 내부 직원 인식 제고 및 실제 예산 사용 부서의 참여를 통한 우선구매 제품의 신규 발굴

2. 공모기간: 2023. 4. 17.(월) ~ 5. 31.(수)

3. 심사기간: 2023. 6. 1.(목)

4. 심사결과

순위	제목	이동 및 부서	득점
1	기본 홍보 "차단 잊음" 기념품	신분철 팀장(운영지원부)	78.4
2	중요의 자외선 차단제 "친환경 물품" 구매	장재은 대리(아동안전지원단)	70.8
3	"커피 맛만 유쾌한, 이젠 드링크하세요."	장재은 대리(아동안전지원단)	62.6
4	꽃다지 펄 "기름도 빨" 분리기도 빨"	복준위 대리(대전교육센터)	59.2
5	노후와 교육장 직원을 위한 교재 "구매를 통한 이용객 안전 사고예방 및 수련원 조도조명 설치"	복준위 대리(대전교육센터)	56.4
6	재정제(예산준) 주원	노라늘 대리(경영기획부)	54.2
7	환경순 저가는 친환경합판	조상준 주임(운영지원부)	51.2

5. 시상금 지급계획: 총 3명 지급(시상품: 시범구매제품인 오티너 보안기)
* 2위 및 3위 동등으로 추첨순으로 추첨(1등: 1명, 2위: 2명, 3위: 1명) 순서대로 상품 지급

6. 소요 예산: 금343,750원(금상심사산상권철회백오십원)

붙임 1. 공모전 심사결과 및 시상계획 1부.
2. 심사결과표 1부.
3. 심사결과 1부, 끝.

■ 기관 신규 녹색제품 구매 품목 발굴

- 공항 내 카셰어링 픽업존 운영 시 환경표지 인증받은 서비스 활용(○○공사)



■ 기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녹색제품 생산지원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한 구매 활성화 계획 수립(○○○○도)
- 도내 녹색제품 품목·생산기업 현황 분석과 녹색제품 활성화 방안 및 세부추진계획 도출 등 연구개발 사업 수행



02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사항

11

■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녹색제품 생산지원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도내 녹색제품 품목 및 생산기업 등 현황 분석
- 공공·민간부문 녹색제품 활성화 방안 및 세부추진과제 도출
- 녹색제품 생산·유통 확대를 위한 인증 지원 방안 마련
- 녹색제품 인식 향상을 위한 제도 홍보 방안 마련

2024년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참고사항 8 녹색제품 경영평가 지표('25년 10월 기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경영평가 편람, 지표 매뉴얼을 통해 최종 지표 확인 후 대응

1 지방자치단체

2026년(2025년 실적) 지표 매뉴얼

국정 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민 약속	2-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정 과제	2-6-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지표명	㉠ 환경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우선구매율			
지표 성격	< 국가주요시책 > - 계약제도 내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등 사회적 가치 확산			
지표 유형	정량	공동	정순	계속(변경)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 환경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지자체 우선 구매 실적 평가		
	평가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 참조		
	평가목적	○ 우선구매를 통해 환경 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 기반 마련 도모		
	기대효과	○ 환경친화 및 사회적 가치의 확산		
	기타참고사항			
측정 방법	연번	평가 분야	개 념	근거법
	1	자활용사은 복지공장 생산품	국가유공자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4 규정에 의거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하고 승인한 생산품	-
	2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3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중 예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4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65조의2
	5	(인중·예비)사회적기업	(인중 사회적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처장이 지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6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의거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인증된 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2조의3
	7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대상으로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증 장애인생산품(물품, 노무용역) 구매 확대를 통해 생산시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도모 및 경제적 자립지원 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 10조
	8	녹색제품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p>○ 산식</p> <p>- (분야별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p> <p>○ 산식 설명</p> <p>- 총 구매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자활용사촌 ②마을기업 ③자활기업 ④사회적협동조합 ⑤(에비·인증)사회적기업 : 지자체에서 물품, 용역구매를 위해 지출한 총 금액 - e호조 '계약관리' - '결산관리' - '계약현황' - '계약대금지급현황(56004)' 사용</p> <p>⑥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 e호조 '지출관리' - '지출결산' - '기타구매실적' - '장애인표준사업장구매실적(23507)' 사용</p> <p>⑦증증장애인 생산품 - e호조 '지출관리' - '지출결산' - '기타구매실적' - '증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23504)' 사용</p> <p>⑧녹색제품 : 녹색제품이 있는 제품군 중 지자체에서 구입한 연간 총 금액 -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른 구매범위와, 에코스퀘어 시스템(ecosq.or.kr)을 통해 집계된 구매액을 적용 ※ 지자체에서 12월말까지 신청한 실적 수정요청 건까지 반영하되, 6월까지 지출한 금액은 9월까지 실적 수정요청한 건까지 반영</p> </div> <p>- 분야별 구매액 : 분야별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자활용사촌 복지공장 : 물품 구매 인정</p> <p>④사회적협동조합 : 물품+용역 구매 인정</p> <p>⑦증증장애인 생산품 : 물품+노무용역 구매 인정</p> <p>②마을기업 ③자활기업 ⑤(에비·인증)사회적기업 ⑥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⑧녹색제품 : 물품+용역+공사 구매 인정</p> </div> <p>- 목표치 :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분야 달성을 위해 구매해야 하는 비율 ※ '25년 실적 - 최근 3개년(21년, 22년, 23년) 평균 사용 ※ 녹색제품은 최고치 미충족이더라도, 목표치가 50% 이상인 경우, 구매율이 50%이상이면 전년 대비 구매액 증가 시 충족으로 판단 • 25년 실적 - 최근 3개년(21년, 22년, 23년) 평균비율의 + 4 퍼센트 포인트</p> <p>- 최저치 : 목표치의 70% ※ 자활용사촌은 최저치 미충족이더라도, 전년 대비 구매액 증가 시 충족으로 판단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증증장애인 생산품의 경우 법정 목표치와 동일 ※ 녹색제품은 최저치는 최근 3개년(21년, 22년, 23년)구매액 평균</p> <p>○ 목표치: 8개 분야 중 4개 이상 목표치 달성 8개 분야 중 5개 이상 최저치 달성 ※ 분야별 목표치 및 최저치 불임 참조</p> <p>○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p> <p>○ 평가기준일: 2025. 12. 31.</p>
--

※ 2027년(2026년 실적) 지표 매뉴얼 미확정으로 향후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합동평가→지표매뉴얼 참고

붙임 2026년('25년 실적) 분야별 목표치 및 최저치

○ 분야별 목표치(최근 3개년 평균 - 2021년, 2022년, 2023년)

지자체명	자활 용사촌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장애 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녹색 제품
서울특별시	0.0074%	0.255%	0.11%	1.21%	4.18%	0.8%	1.00%	46.33%
부산광역시	0.0006%	0.201%	0.26%	0.86%	1.64%	0.8%	1.00%	58.39%
대구광역시	0.0001%	0.120%	0.49%	1.47%	2.82%	0.8%	1.00%	43.84%
인천광역시	0.0033%	0.108%	0.44%	0.60%	3.56%	0.8%	1.00%	44.39%
광주광역시	0.0011%	0.103%	0.64%	0.58%	4.00%	0.8%	1.00%	48.35%
대전광역시	0.0200%	0.268%	0.32%	0.75%	3.00%	0.8%	1.00%	41.91%
울산광역시	0.0001%	0.498%	0.40%	0.32%	2.99%	0.8%	1.00%	34.48%
세종특별자치시	0.0003%	0.285%	0.49%	0.95%	4.02%	0.8%	1.00%	31.13%
경기도	0.0146%	0.092%	0.21%	2.08%	7.05%	0.8%	1.00%	36.91%
강원특별자치도	0.0050%	0.040%	0.18%	0.37%	1.45%	0.8%	1.00%	24.68%
충청북도	0.0510%	0.034%	0.25%	0.60%	3.96%	0.8%	1.00%	29.13%
충청남도	0.0001%	0.150%	0.22%	0.38%	2.26%	0.8%	1.00%	24.64%
전북특별자치도	0.0003%	0.122%	0.52%	0.40%	3.06%	0.8%	1.00%	21.40%
전라남도	0.0165%	0.138%	0.18%	0.56%	1.89%	0.8%	1.00%	23.98%
경상북도	0.0032%	0.049%	0.15%	0.32%	1.56%	0.8%	1.00%	22.04%
경상남도	0.0030%	0.015%	0.10%	0.66%	1.82%	0.8%	1.00%	26.87%
제주특별자치도	0.0005%	0.078%	0.21%	1.88%	3.13%	0.8%	1.00%	24.25%

○ 분야별 최저치(목표치의 70%)

지자체명	자활 용사촌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장애 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녹색 제품
서울특별시	0.0001%	0.179%	0.08%	0.85%	2.93%	0.8%	1.00%	42.33%
부산광역시	0.0001%	0.141%	0.18%	0.60%	1.15%	0.8%	1.00%	54.39%
대구광역시	0.0001%	0.084%	0.34%	1.03%	1.97%	0.8%	1.00%	39.84%
인천광역시	0.0001%	0.076%	0.31%	0.42%	2.50%	0.8%	1.00%	40.39%
광주광역시	0.0001%	0.072%	0.45%	0.40%	2.80%	0.8%	1.00%	44.35%
대전광역시	0.0001%	0.188%	0.22%	0.53%	2.10%	0.8%	1.00%	37.91%
울산광역시	0.0001%	0.349%	0.28%	0.22%	2.09%	0.8%	1.00%	30.48%
세종특별자치시	0.0001%	0.200%	0.34%	0.66%	2.82%	0.8%	1.00%	27.13%
경기도	0.0001%	0.064%	0.15%	1.45%	4.93%	0.8%	1.00%	32.91%
강원특별자치도	0.0001%	0.028%	0.13%	0.26%	1.02%	0.8%	1.00%	20.68%
충청북도	0.0001%	0.024%	0.18%	0.42%	2.77%	0.8%	1.00%	25.13%
충청남도	0.0001%	0.105%	0.15%	0.26%	1.58%	0.8%	1.00%	20.64%
전북특별자치도	0.0001%	0.085%	0.36%	0.28%	2.14%	0.8%	1.00%	17.40%
전라남도	0.0001%	0.097%	0.13%	0.39%	1.33%	0.8%	1.00%	19.98%
경상북도	0.0001%	0.034%	0.11%	0.22%	1.09%	0.8%	1.00%	18.04%
경상남도	0.0001%	0.010%	0.07%	0.46%	1.28%	0.8%	1.00%	22.87%
제주특별자치도	0.0001%	0.055%	0.15%	1.32%	2.19%	0.8%	1.00%	20.25%

2 공기업·준정부기관

3-2 녹색제품 의무구매

1. 정책 개요

■ 관련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제품 소비 생산 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시행 ('05.7)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
 - ※ 안정적 공급 불가, 현저한 품질저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동법 제 10조)
 - 공사설계서 등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 업무평가 항목에 구매실적 반영 등

■ 녹색제품의 범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환경표지 제품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GR)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 제품

■ 적용 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전 공공기관

2. 법적의무 권장사항 평가지표 체계

①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1.노력도	1. 녹색제품 구매액 증감분(직전년도 대비)	50	정량
	2. 녹색제품 구매액 증감분(최근 5년 평균 대비)	50	정량

②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지표	1. 녹색제품 구매액 증감분(직전년도 대비)(50점)										
측정산식	1. 전년대비 당해년도 녹색구매액 증감분(50) $X = \frac{\text{당해년도 녹색구매액} - \text{전년도 녹색구매액}}{\text{전년도 녹색구매액}} \times 100$ <평정점(P) 산출공식> - $X \geq 5\%$, P = 50 - $-5\% < X < 5\%$, P = (X+5)×3+20 - $X \leq -5\%$, 구간별로 점수 부여										
	<table border="1"> <thead> <tr> <th>$-5\% \geq X > -20\%$</th> <th>$-20\% \geq X > -40\%$</th> <th>$-40\% \geq X > -60\%$</th> <th>$-60\% \geq X > -80\%$</th> <th>$-80\% \geq X$</th> </tr> </thead> <tbody> <tr> <td>20</td> <td>16</td> <td>12</td> <td>8</td> <td>4</td> </tr> </tbody> </table> (예시) X=-3.5%일 경우 24.5점, X=1%일 경우 38점	$-5\% \geq X > -20\%$	$-20\% \geq X > -40\%$	$-40\% \geq X > -60\%$	$-60\% \geq X > -80\%$	$-80\% \geq X$	20	16	12	8	4
	$-5\% \geq X > -20\%$	$-20\% \geq X > -40\%$	$-40\% \geq X > -60\%$	$-60\% \geq X > -80\%$	$-80\% \geq X$						
	20	16	12	8	4						
1. P=50인 경우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세부평가항목 최고값 100점 부여 2.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P=25를 부여 3. 전년도 녹색구매액이 없는 경우 [평가지표1] 평가 제외 4. ‘녹색구매 우수기관(최근 2년 연속 평가 만점 기관)’의 경우 다음에 따라 평정점 산출 <평정점(P) 산출공식> - $X' \geq 0\%$, P = 50 - $-10\% < X' < 0\%$, P = (X'+10)×3+20 - $X' \leq -10\%$, 구간별로 점수 부여											
<table border="1"> <thead> <tr> <th>$-10\% \geq X' > -30\%$</th> <th>$-30\% \geq X' > -50\%$</th> <th>$-50\% \geq X' > -70\%$</th> <th>$-70\% \geq X' > -90\%$</th> <th>$-90\% \geq X'$</th> </tr> </thead> <tbody> <tr> <td>20</td> <td>16</td> <td>12</td> <td>8</td> <td>4</td> </tr> </tbody> </table> (예시) X'=-6.5%일 경우 30.5점, X'=-1%일 경우 47점	$-10\% \geq X' > -30\%$	$-30\% \geq X' > -50\%$	$-50\% \geq X' > -70\%$	$-70\% \geq X' > -90\%$	$-90\% \geq X'$	20	16	12	8	4	
$-10\% \geq X' > -30\%$	$-30\% \geq X' > -50\%$	$-50\% \geq X' > -70\%$	$-70\% \geq X' > -90\%$	$-90\% \geq X'$							
20	16	12	8	4							
	[유의사항] ※ 전년도 구매실적(n-1)이 전전년도 구매실적(n-2) 대비 5%를 초과 달성한 경우 해당연도 구매실적(n) 평가 시 기준금액은 전전년도 구매실적의 105%로 설정 $X = \frac{\{An - (Bn-2 \times 1.05)\}}{(Bn-2 \times 1.05)} \times 100$ (An: 해당연도(n년) 녹색구매액, Bn-2: 전전년도 녹색구매액) ※ 전년도 구매실적(n-1)이 전전년도 구매실적(n-2) 대비 -10% 미만 급락한 경우 해당연도 구매실적(n) 평가 시 기준금액은 전전년도 구매실적의 90%로 설정 $X = \frac{\{An - (Bn-2 \times 0.9)\}}{(Bn-2 \times 0.9)} \times 100$ (An: 해당연도(n년) 녹색구매액, Bn-2: 전전년도 녹색구매액)										
평가근거/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실적 보고서										
평가지표	2. 녹색제품 구매액 증감분(최근 5년 평균 대비)(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 평균 대비 당해년도 녹색구매액 증감분(50) $Y = \{(\text{당해년도 녹색구매액} - \text{최근 5년 평균 녹색구매액}) / \text{최근 5년 평균 녹색구매액}\} \times 100$ <평정점(P) 산출공식> - $Y \geq 5\%$, $P = 50$ - $-5\% < Y < 5\%$, $P = (Y+5) \times 3 + 20$ - $Y \leq -5\%$, 구간별로 점수 부여 <table border="1" data-bbox="312 413 1204 523"> <thead> <tr> <th>$-5\% \geq Y > -20\%$</th> <th>$-20\% \geq Y > -40\%$</th> <th>$-40\% \geq Y > -60\%$</th> <th>$-60\% \geq Y > -80\%$</th> <th>$-80\% \geq Y$</th> </tr> </thead> <tbody> <tr> <td>20</td> <td>16</td> <td>12</td> <td>8</td> <td>4</td> </tr> </tbody> </table> <p>(예시) $Y = -4\%$일 경우 23점, $Y = 3\%$일 경우 44점</p>	$-5\% \geq Y > -20\%$	$-20\% \geq Y > -40\%$	$-40\% \geq Y > -60\%$	$-60\% \geq Y > -80\%$	$-80\% \geq Y$	20	16	12	8	4
$-5\% \geq Y > -20\%$	$-20\% \geq Y > -40\%$	$-40\% \geq Y > -60\%$	$-60\% \geq Y > -80\%$	$-80\% \geq Y$							
20	16	12	8	4							
<p>측정산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50$인 경우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세부평가항목 최고값 100점 부여 2. 5년치 데이터가 없는 기관은 존재하는 데이터의 평균값 대입 3.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P=25$를 부여 4. 극대치가 존재하는 경우, 극대치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평균값 산출 ※ 기관별로 5년간 녹색구매액의 표본집단 표준편차(σ)를 구하여, '5년간 평균녹색구매액+σ'보다 큰 금액에 해당하는 특정연도의 녹색구매액을 극대치로 정의 5. [평가지표1]의 평가가 제외된 경우 [평가지표2] '평정점(P)$\times 2$'로 점수 부여 6. '녹색구매 우수기관(최근 2년 연속 평가 만점 기관)'의 경우 다음에 따라 평정점 산출 <평정점(P) 산출공식> - $Y' \geq 0\%$, $P = 50$ - $-10\% < Y' < 0\%$, $P = (Y'+10) \times 3 + 20$ - $Y' \leq -10\%$, 구간별로 점수 부여 <table border="1" data-bbox="312 987 1199 1097"> <thead> <tr> <th>$-10\% \geq Y' > -30\%$</th> <th>$-30\% \geq Y' > -50\%$</th> <th>$-50\% \geq Y' > -70\%$</th> <th>$-70\% \geq Y' > -90\%$</th> <th>$-90\% \geq Y'$</th> </tr> </thead> <tbody> <tr> <td>20</td> <td>16</td> <td>12</td> <td>8</td> <td>4</td> </tr> </tbody> </table> <p>(예시) $Y' = -6.5\%$일 경우 30.5점, $Y' = -1\%$일 경우 47점</p>	$-10\% \geq Y' > -30\%$	$-30\% \geq Y' > -50\%$	$-50\% \geq Y' > -70\%$	$-70\% \geq Y' > -90\%$	$-90\% \geq Y'$	20	16	12	8	4
$-10\% \geq Y' > -30\%$	$-30\% \geq Y' > -50\%$	$-50\% \geq Y' > -70\%$	$-70\% \geq Y' > -90\%$	$-90\% \geq Y'$							
20	16	12	8	4							
<p>측정산식 [가점]</p>	<p>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n년, n년 2월 제출) 및 구매실적(n-1년, n년 3월 제출) 제출 기한 준수 시 가점(5점) 부여</p> <p>※ 가점의 경우 [평가지표1], [평가지표2]와 별도 산출 (예시) [평가지표1]=38점, [평가지표2]=45점, 가점=5점일 경우 최종 평정점은 88점</p> <p>※ 지표1+지표2+가점의 합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p>										
<p>평가근거/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실적 보고서 										

3 지방공기업

①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1.노력도	1. 녹색제품 구매액 증감분(직전년도 대비)	50	정량
	2. 녹색제품 구매액 증감분(최근 5년 평균 대비)	50	정량

②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지표	1. 녹색제품 구매액 증감분(직전년도 대비)(50점)										
측정산식	• 전년대비 당해년도 녹색구매액 증감분(50) $X = \{(\text{당해년도 녹색구매액} - \text{전년도 녹색구매액}) / \text{전년도 녹색구매액}\} \times 100$ <평정점(P) 산출공식> - $X \geq 5\%$, $P = 50$ - $-5\% < X < 5\%$, $P = (X+5) \times 3 + 20$ - $X \leq -5\%$, 구간별로 점수 부여										
	<table border="1"> <thead> <tr> <th>$-5\% \geq X > -20\%$</th> <th>$-20\% \geq X > -40\%$</th> <th>$-40\% \geq X > -60\%$</th> <th>$-60\% \geq X > -80\%$</th> <th>$-80\% \geq X$</th> </tr> </thead> <tbody> <tr> <td>20</td> <td>16</td> <td>12</td> <td>8</td> <td>4</td> </tr> </tbody> </table>	$-5\% \geq X > -20\%$	$-20\% \geq X > -40\%$	$-40\% \geq X > -60\%$	$-60\% \geq X > -80\%$	$-80\% \geq X$	20	16	12	8	4
	$-5\% \geq X > -20\%$	$-20\% \geq X > -40\%$	$-40\% \geq X > -60\%$	$-60\% \geq X > -80\%$	$-80\% \geq X$						
	20	16	12	8	4						
	(예시) $X = -3.5\%$ 일 경우 24.5점, $X = 1\%$ 일 경우 38점										
	1. $P = 50$ 인 경우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세부평가항목 최고값 100점 부여 2.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P = 25$ 를 부여 3. 전년도 녹색구매액이 없는 경우 [평가지표1] 평가 제외 4. '녹색구매 우수기관(최근 2년 연속 평가 만점 기관)'의 경우 다음에 따라 평정점 산출 <평정점(P) 산출공식> - $X' \geq 0\%$, $P = 50$ - $-10\% < X' < 0\%$, $P = (X'+10) \times 3 + 20$ - $X' \leq -10\%$, 구간별로 점수 부여										
	<table border="1"> <thead> <tr> <th>$-10\% \geq X' > -30\%$</th> <th>$-30\% \geq X' > -50\%$</th> <th>$-50\% \geq X' > -70\%$</th> <th>$-70\% \geq X' > -90\%$</th> <th>$-90\% \geq X'$</th> </tr> </thead> <tbody> <tr> <td>20</td> <td>16</td> <td>12</td> <td>8</td> <td>4</td> </tr> </tbody> </table>	$-10\% \geq X' > -30\%$	$-30\% \geq X' > -50\%$	$-50\% \geq X' > -70\%$	$-70\% \geq X' > -90\%$	$-90\% \geq X'$	20	16	12	8	4
	$-10\% \geq X' > -30\%$	$-30\% \geq X' > -50\%$	$-50\% \geq X' > -70\%$	$-70\% \geq X' > -90\%$	$-90\% \geq X'$						
	20	16	12	8	4						
	(예시) $X' = -6.5\%$ 일 경우 30.5점, $X' = -1\%$ 일 경우 47점										
[유의사항]											
※ 전년도 구매실적($n-1$)이 전전년도 구매실적($n-2$) 대비 5%를 초과 달성한 경우 해당연도 구매실적(n) 평가 시 기준금액은 전전년도 구매실적의 105%로 설정 $X = \{[A_n - (B_{n-2} \times 1.05)] / (B_{n-2} \times 1.05)\} \times 100$ (An: 해당연도(n 년) 녹색구매액, Bn-2: 전전년도 녹색구매액)											
※ 전년도 구매실적($n-1$)이 전전년도 구매실적($n-2$) 대비 -10% 미만 급락한 경우 해당연도 구매실적(n) 평가 시 기준금액은 전전년도 구매실적의 90%로 설정 $X = \{[A_n - (B_{n-2} \times 0.9)] / (B_{n-2} \times 0.9)\} \times 100$											

평가지표	2. 녹색제품 구매액 증감분(최근 5년 평균 대비)(50점)																				
측정산식	<p>• 최근 5년 평균 대비 당해년도 녹색구매액 증감분(50) $Y = \{(\text{당해년도 녹색구매액} - \text{최근 5년 평균 녹색구매액}) / \text{최근 5년 평균 녹색구매액}\} \times 100$</p> <p><평정점(P) 산출공식> - $Y \geq 5\%$, $P = 50$ - $-5\% < Y < 5\%$, $P = (Y+5) \times 3 + 20$ - $Y \leq -5\%$, 구간별로 점수 부여</p> <table border="1" data-bbox="312 494 1204 606"> <thead> <tr> <th>$-5\% \geq Y > -20\%$</th> <th>$-20\% \geq Y > -40\%$</th> <th>$-40\% \geq Y > -60\%$</th> <th>$-60\% \geq Y > -80\%$</th> <th>$-80\% \geq Y$</th> </tr> </thead> <tbody> <tr> <td>20</td> <td>16</td> <td>12</td> <td>8</td> <td>4</td> </tr> </tbody> </table> <p>(예시) $Y = -4\%$일 경우 23점, $Y = 3\%$일 경우 44점</p> <p>1. $P=50$인 경우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세부평가항목 최고값 100점 부여 2. 5년치 데이터가 없는 기관은 존재하는 데이터의 평균값 대입 3.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P=25$를 부여 4. 극대치가 존재하는 경우, 극대치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평균값 산출 ※ 기관별로 5년간 녹색구매액의 표본집단 표준편차(σ)를 구하여, ‘5년간 평균녹색구매액+σ’보다 큰 금액에 해당하는 특정연도의 녹색구매액을 극대치로 정의 5. [평가지표1]의 평가가 제외된 경우 [평가지표2] ‘평정점(P)$\times 2$’로 점수 부여 6. ‘녹색구매 우수기관(최근 2년 연속 평가 만점 기관)’의 경우 다음에 따라 평정점 산출</p> <p><평정점(P) 산출공식> - $Y' \geq 0\%$, $P = 50$ - $-10\% < Y' < 0\%$, $P = (Y'+10) \times 3 + 20$ - $Y' \leq -10\%$, 구간별로 점수 부여</p> <table border="1" data-bbox="312 1089 1204 1201"> <thead> <tr> <th>$-10\% \geq Y' > -30\%$</th> <th>$-30\% \geq Y' > -50\%$</th> <th>$-50\% \geq Y' > -70\%$</th> <th>$-70\% \geq Y' > -90\%$</th> <th>$-90\% \geq Y'$</th> </tr> </thead> <tbody> <tr> <td>20</td> <td>16</td> <td>12</td> <td>8</td> <td>4</td> </tr> </tbody> </table> <p>(예시) $Y' = -6.5\%$일 경우 30.5점, $Y' = -1\%$일 경우 47점</p>	$-5\% \geq Y > -20\%$	$-20\% \geq Y > -40\%$	$-40\% \geq Y > -60\%$	$-60\% \geq Y > -80\%$	$-80\% \geq Y$	20	16	12	8	4	$-10\% \geq Y' > -30\%$	$-30\% \geq Y' > -50\%$	$-50\% \geq Y' > -70\%$	$-70\% \geq Y' > -90\%$	$-90\% \geq Y'$	20	16	12	8	4
$-5\% \geq Y > -20\%$	$-20\% \geq Y > -40\%$	$-40\% \geq Y > -60\%$	$-60\% \geq Y > -80\%$	$-80\% \geq Y$																	
20	16	12	8	4																	
$-10\% \geq Y' > -30\%$	$-30\% \geq Y' > -50\%$	$-50\% \geq Y' > -70\%$	$-70\% \geq Y' > -90\%$	$-90\% \geq Y'$																	
20	16	12	8	4																	
측정산식 [가점]	<p>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n년, n년 2월 제출) 및 구매실적(n-1년, n년 3월 제출) 제출 기한 준수 시 가점(5점) 부여 ※ 가점의 경우 [평가지표1], [평가지표2]와 별도 산출 (예시) [평가지표1]=38점, [평가지표2]=45점, 가점=5점일 경우 최종 평정점은 88점 ※ 지표1+지표2+가점의 합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p>																				
평가근거/ 자료	<p>•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실적 보고서</p>																				

PART 04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FAQ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FAQ

1. 녹색제품이란 무엇인가요?

-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근거하여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및 저탄소제품입니다.

2.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는 무엇인가요?

-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구매하여야 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환경성을 갖춘 제품의 시장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더 많은 환경성을 갖춘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3.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이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특수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4. 법정 녹색제품 의무구매 비율이 있나요?

- 녹색제품은 법정 구매율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매율은 100%입니다.
- 다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녹색제품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시스템명은 ‘에코스퀘어(www.ecosq.or.kr)’이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URL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에코스퀘어에서는 녹색제품 정보(제품명, 인증기간, 기업, 지역 등) 및 공공기관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녹색제품 교육 및 컨설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에코스퀘어 기관 고유 아이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기관 고유 아이디는 ‘green+조달청 수요기관코드 또는 행안부 기관코드’입니다. 조달청 수요기관코드가 B552518일 경우 기관 고유 아이디는 ‘greenB552518’입니다.
- 최초비밀번호는 ‘green+기관일련번호+!@#’으로 기관일련번호가 8945일 경우 최초비밀번호는 green8945!@#입니다.
- 기관 고유 아이디 및 비밀번호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공구매팀 이메일(green@keiti.re.kr)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관련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7.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꼭 제출하여야 하나요?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합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문(1월말~2월초)을 통하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꼭 제출하여야 하나요?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실적을 집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에코스퀘어(www.ecosq.or.kr)를 통하여 집계된 실적을 확인 후 확정하는 것이며, 확정된 실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취합하여 대국민 공표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문(2월말~3월초)을 통하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에코스퀘어(www.ecosq.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코스퀘어→ 친환경녹색진흥→ 녹색구매 정보→ 구매실적 현황에서 전체 실적, 조달 구매실적, 외부 연계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녹색제품 구매실적 수정요청은 원가요?

- 에코스퀘어(www.ecosq.or.kr)에 집계된 총 구매금액 또는 녹색제품 구매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신규실적 추가요청, 녹색구매 인정요청, 기존실적 예외요청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설명
신규실적 추가요청	자동 실적집계가 되지 않는 판매처에서 구입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집계를 요청하는 경우
녹색구매 인정요청	조달로 구매하였으나 총액계약 등으로 녹색제품 식별이 불가하여 일반제품으로 집계된 실적을 녹색제품으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기존실적 예외요청	구매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일반제품으로 구매한 실적에 대한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11.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이행지원 사업이 있나요?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이행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 상담회 및 지자체 협력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명
제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문을 통하여 교육 시 안내 시 시기에 맞춰 신청 후 수강(연간 10회 이상 진행) • (온라인) 에코스퀘어 사이버환경실무교육에서 '녹색제품 제도 및 에코스퀘어 사용법' 강의 제공(수강방법 등 공문으로 안내 중)
제도 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별 전년도 실적 중심으로 구매실적을 분석하고 실적 제고방안을 제공 • 공문을 통해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매월(4월~11월) 추진 중
지자체 협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지자체를 모집·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컨설팅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중점과제 선정 및 이행 지원

12.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잘 이행한 기관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 매해 공공기관 유형별 1개 기관(총 8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및 해외연수를 추진중이며,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시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잘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제도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벌칙조항 등은 없지만, 공공기관 녹색제품은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을 매해 대국민 공표 중이며, 공공기관 알리오 경영공시 항목으로 제도이행 미흡 등에 따른 외부 지적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이행이 필요합니다.

14. 녹색제품 관련 경영평가 지표가 있나요?

- 현재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녹색제품 평가지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상세 지표는 경영평가편람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평가주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평가지표	구매율	구매실적의 증감	구매실적의 증감

- 일부 기타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도 소관 부처 및 지자체에서 경영평가 항목 중 녹색제품 지표를 반영 중입니다.

15. 녹색제품 의무구매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 유선, Q&A게시판 및 챗봇을 통하여 녹색제품 관련한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설명
전화상담	02-2284-1065(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Q&A 게시판	에코스퀘어(www.ecosq.or.kr)→알림센터→Q&A
챗봇	에코스퀘어(www.ecosq.or.kr) 오른쪽 하단



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인쇄일: 2025년 12월

발행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mcee.go.kr

www.keiti.re.kr

문의처: 02-2284-1065



본 지침은 녹색제품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으며, 재활용할 수 있도록 코팅하지 않았습니다.